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

[시행 2025. 4. 1.] [환경부령 제1167호, 2025. 4. 1., 일부개정]

-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포장재 재질·구조 기준, 폐기물부담금 관련) 044-201-7389
-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비용기보증금, 재활용의무이행, 재활용부과금 관련) 044-201-7392
-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 에너지회수시설, 고품연료 관련) 044-201-7408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 044-201-7346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1회용품 관련) 044-201-7359, 7345, 735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4. 7.]

**제1조의2(재생원료의 범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폐유리병을 가공·제조한 유리분말
2. 폐금속캔을 압축·파쇄하여 제조한 금속원료
3. 폐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폐발포합성수지, 합성수지재질 제품·포장재를 가공·제조한 재생원료
4. 폐타이어를 가공·제조한 고무분말
5. 형광등의 유리를 가공·제조한 유리분말
6.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에서 분리한 발광다이오드칩, 칩 장착용 보드 및 그 밖의 부분품을 압축·파쇄하여 제조한 재생원료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재생이용한 원료

[본조신설 2024. 4. 11.]

[종전 제1조의2는 제1조의3으로 이동 <2024. 4. 11.>]

**제1조의3(폐자원에너지)** 법 제2조제8호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4. 11.>

1.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고품(固形)연료제품(이하 “고형연료제품”이라 한다)
2.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매립가스, 바이오가스 및 합성가스 등 기체연료
3.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정제연료유 및 재생연료유 등 액체연료
4. 폐기물로부터 회수된 소각열(燒却熱)에너지

[본조신설 2014. 7. 22.]

[제1조의2에서 이동 <2024. 4. 11.>]

**제2조(재활용제품)** 법 제2조제9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 7. 22.>

[전문개정 2009. 4. 7.]

**제3조(재활용시설)** 법 제2조제10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장치·장비·설비 등을 말한다.

<개정 2010. 12. 31., 2015. 10. 23.>

1.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운반·보관을 위하여 특별히 제조 또는 설치되어 사용되는 수집·운반 장비 또는 보관 시설
2.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운반 또는 가공을 위한 압축시설, 파쇄시설, 용융시설(溶融施設) 등의 중간가공시설
3. 재활용제품을 제조·가공·보관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장비·시설
4. 재활용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전처리(前處理) 장치·장비·설비

5. 유기성(有氣性) 폐기물을 이용하여 퇴비·사료를 제조하는 퇴비화·사료화 시설 및 에너지화 시설
6.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의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같은 항 제6호의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같은 항 제7호의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폐기물의 재활용에 사용하는 시설 및 장비
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사용하는 시설 및 장비
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치·장비·설비 등

[전문개정 2009. 4. 7.]

**제3조의2(생분해성수지제품)** 법 제2조제1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1. 10. 28., 2013. 3. 23.>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2.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시험기관으로부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생분해성수지제품에 대한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받은 제품

[전문개정 2009. 4. 7.]

**제3조의3(개선명령)**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에게 포장재의 재질·구조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명령서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 4. 11.>

②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개선명령 이행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4. 11.>

③ 재활용의무생산자는 개선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결과를 개선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2. 24.]

[제3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3조의3은 제3조의6으로 이동 <2024. 4. 11.>]

**제3조의4(개선기간의 연장 신청 및 승인)** ①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개선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개선기간 연장신청서에 연장신청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 4. 11.>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 연장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1년 이내에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연장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2년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하여 개선기간 연장 신청을 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2. 24.]

[제3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3조의4는 제3조의7로 이동 <2024. 4. 11.>]

**제3조의5(제조·수입·판매 중단명령)**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포장재·제품의 제조·수입 및 판매의 중단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에 따른 중단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호의4서식의 포장재·제품의 제조·수입·판매 중단명령서를 발부해야 한다. <개정 2024. 4. 11.>

② 제1항에 따른 중단명령서를 받은 자는 중단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포장재·제품의 제조·수입 및 판매를 중단해야 하고, 중단기간이 종료되거나 중단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해당 포장재·제품을 제조·수입 및 판매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19. 12. 24.]

[제3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3조의5는 제3조의3으로 이동 <2024. 4. 11.>]

**제3조의6(포장재의 재질·구조 평가 등)** ①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한 제품을 제조·수입 및 판매하기 전에 해당 포장재(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경우 그 포장재를 말한다)에 대하여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질·색상·무게 및 재활용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이하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라 한다) 기준에 따른 자체평가(이하 “포장재 재질·구조 자체평가”라 한다)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4. 4. 11.>

②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1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구조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별지 제1호의5서식의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4. 11.>

1. 포장재 재질·구조 자체평가 결과
2. 포장재 재질·구조 자체평가 결과에 관한 증빙서류(제1호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 가장 낮은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한 후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별지 제1호의6서식의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서를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 4. 11.>

④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 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7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4. 11.>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⑥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공단의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를 받은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한 제품을 제조·수입 및 판매한 후 해당 제품의 목록과 포장재의 재질·구조 정보에 관한 자료를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한 제품을 제조·수입 및 판매한 해의 다음 연도 4월 15일까지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2. 24.]

[제3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3조의6은 제3조의4로 이동 <2024. 4. 11.>]

**제3조의7(포장재의 재질·구조 평가 결과 표시)** ①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3조의6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조·수입 중인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 중인 제품의 포장재 겉면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를 표시해야 한다. 다만, 평가 결과를 표시하여 포장재의 재질·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평가 결과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 4. 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공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 6개월 이내에 포장재 겉면에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를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8서식의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 표시 기한 연기신청서에 연기신청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4. 11.>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 표시 기한 연기신청서를 검토하여 9개월의 범위에서 그 표시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2. 24.]

[제3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3조의7은 제3조의5로 이동 <2024. 4. 11.>]

**제4조(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①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무인정보단말기”란 음식물의 주문·배달·결제 등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기기 화면에 표시하여 처리하는 형태의 기기를 말한다. <신설 2024. 4. 11.>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 4. 11.>

[전문개정 2014. 2. 12.]

**제4조의2(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법 제10조의2제6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 1회용 합성수지 재질 제품의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의 대체(代替)
2. 1회용 봉투·쇼핑백의 회수·재활용 촉진
3. 환경미화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4. 민간 환경단체의 환경보전 활동 지원

[전문개정 2009. 4. 7.]

**제4조의3 삭제 <2009. 4. 7.>**

**제5조(제품·재료·용기의 출고·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이하 "폐기물부담금"이라 한다)을 내야 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출고·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의 출고 실적서(수입업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수입 실적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1., 2012. 11. 1., 2013. 1. 31., 2014. 2. 12., 2019. 12. 24., 2023. 4. 19.>

1. 사업자등록증 사본(최초로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결산보고서 등 제품·재료·용기의 출고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입업자의 경우 수입승인서 또는 수입신고서의 사본)
3. 제품별 폐기물부담금 산출 기초자료(플라스틱제품 및 그 포장재의 경우에는 합성수지투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

[전문개정 2009. 4. 7.]

[제목개정 2012. 11. 1.]

**제5조의2(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입증)** ① 법 제12조제2항 후단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임을 입증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확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품별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산출 기초자료(플라스틱제품의 경우에는 합성수지투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서를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5. 27.]

**제6조(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 영 제12조제4항 전단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2호의4서식(수입업자의 경우 별지 제2호의5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 11. 1., 2019. 12. 24., 2020. 5. 27.>

[전문개정 2009. 4. 7.]

**제7조(폐기물부담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12조제4항 후단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경우는 산출된 폐기물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고, 연 4분기로 똑같이 나누어 내게 하여야 한다.

② 영 제12조제4항 후단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분기별 납부기한은 제1기분은 해당 연도 5월 20일까지로, 제2기분은 해당 연도 7월 20일까지로, 제3기분은 해당 연도 9월 20일까지로, 제4기분은 해당 연도 11월 20일까지로 한다.

③ 폐기물부담금을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폐기물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를 제5조에 따른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출고·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 제출 시 함께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31., 2012. 11. 1.>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의 분할납부 신청을 받으면 제6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를 갈음하여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 별지 제2호의4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31., 2019. 12. 24., 2020. 5. 27.>

[전문개정 2009. 4. 7.]

**제8조(플라스틱 제품·재료·용기의 폐기물부담금 면제를 위한 회수·재활용 방법)** ①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 부담금 면제를 신청하려는 자가 폐기물을 회수할 때에는 해당 플라스틱 제품·재료·용기의 판매지역마다 회수체계를 갖추어 회수하거나 회수·재활용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회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수한 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재활용해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은 회수·재활용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할 수 있다.<개정 2021. 12. 31., 2025. 4. 1.>

1. 전자제품: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제품군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
2.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발포폴리스티렌(EPS), 그 밖에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별표 6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방법과 기준
3. 그 밖의 플라스틱 제품·재료·용기: 재생원료·성형(成形)제품·고형연료제품의 제조 또는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

[본조신설 2013. 1. 31.]

**제9조(플라스틱 제품·재료·용기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서의 제출 및 결과의 통지)** ①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 부담금 면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2., 2016. 12. 30.>

1. 제5조에 따른 플라스틱 제품·재료·용기의 출고·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
2.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플라스틱 제품·재료·용기의 회수·재활용 관리대장
3. 그 밖에 회수·재활용 실적을 확인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해당 플라스틱 제품·재료·용기의 회수·재활용 실적을 조사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폐기물부담금의 감면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11. 22.>

[본조신설 2013. 1. 31.]

**제10조(폐기물부담금·재활용부과금의 반환)** ① 폐기물부담금 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이하 “재활용부과금”이라 한다)을 납부한 자가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부과금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폐기물부담금·재활용부과금 반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단이 법 제34조의7제2항에 따른 자원 절약 및 재활용촉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영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출고 내용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또는 수출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나.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다.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수결정의 오류 또는 수납의 착오 등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2.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부과금 납부영수증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공단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폐기물부담금·재활용부과금 반환지급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4. 19.]

**제10조의2(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신청 등)** ① 영 제14조의3제4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납부기한 전에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4조의3제5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의 통지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통지서로 한다.

③ 영 제14조의3제7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 취소의 통지는 별지 제6호의4서식의 통지서로 한다.

[본조신설 2014. 2. 12.]

[종전 제10조의2는 제10조의3으로 이동 <2014. 2. 12.>]

**제10조의3(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기준 및 조치)**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 2. 12.>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지키지 아니한 사항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개선기간 및 수거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폐기물배출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간을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4. 2. 12., 2014. 7. 22.>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이행기간에 별지 제6호의5서식의 이행기간 연장신청서에 재활용기준 준수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2. 12., 2014. 7. 22.>

[전문개정 2009. 4. 7.]

[제10조의2에서 이동 <2014. 2. 12.>]

**제11조(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의 지정)** ① 영 제16조제2호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분리배출 표시 대상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1.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전문기관의 재질 검사성적(합성수지 재질이나 그 밖의 복합재질로 된 제품·포장재만 해당한다)
2. 제품·포장재의 생산·판매량 및 폐기물의 회수체계
3. 분리배출 표시 도안이 표시된 상표 등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 대상 지정신청을 받으면 10일 이내에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지정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분리배출 표시 대상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31.>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분리배출표시 대상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9. 12. 31.>

1. 거짓으로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사업자가 지정받은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여건의 변화 등으로 지정받은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의 분리배출 또는 재활용이 기술적으로 어렵게 된 경우

[전문개정 2009. 4. 7.]

**제12조(표준용기의 지정 및 사용 등록)**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표준용기(이하 "표준용기"라 한다)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용기의 사용대상 제품, 용량·색상·모양 등 규격 및 사용 시 준수사항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표준용기의 사용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표준용기 사용등록 신청서를 법 제15조의6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이하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 7. 1.>

③ 제2항에 따른 표준용기 사용등록 신청을 받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표준용기 사용등록 신청이 적정한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2. 7. 1.>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환경부장관은 표준용기 사용등록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1. 21.]

**제12조의2(자원순환보증금액)** 법 제15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액(이하 "자원순환보증금액"이라 한다)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22. 7. 1.]

**제12조의3(취급수수료 및 처리지원금의 산정)** ① 법 제15조의2제4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보관과 운반에 드는 비용"이란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이하 "자원순환보증금"이라 한다)이 제품 가격에 포함된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이하 "비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라 한다),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소매업·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별로 구분하여 합의로 정한 금액(이하 "취급수수료"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2. 7. 1.>

1. 임차료, 인건비 등 자원순환보증금이 제품 가격에 포함된 제품의 비용기(이하 "비용기"라 한다)의 보관에 드는 비용

2. 차량·유류비, 인건비 등 비용기의 운반에 드는 비용

② 비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취급수수료를 정한 경우 합의가 있는 날부터 2일 이내에 합의된 취급수수료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2. 7. 1.>

③ 비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는 제1항에 따라 취급수수료를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신청 사유 및 취급수수료의 산정근거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 7. 1.>

④ 제3항에 따른 조정 요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비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에게 취급수수료를 합의하여 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2. 7. 1.>

⑤ 제4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비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는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취급수수료를 합의하여 정해야 한다.<개정 2022. 7. 1.>

⑥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취급수수료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 등을 고려하여 취급수수료를 정하여 고시한다.

⑦ 법 제15조의2제4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환경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이하 "처리지원금"이라 한다)을 말한다.<신설 2022. 12. 2.>

1. 임차료, 인건비 등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1회용 컵(이하 "1회용 컵"이라 한다)의 보관에 드는 비용

2. 차량·유류비, 인건비 등 1회용 컵의 운반에 드는 비용

3. 표준용기 외의 1회용 컵을 사용하는 경우 이를 선별·관리 및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

⑧ 환경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처리지원금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처리지원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2. 12. 2.>

⑨ 제8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판매자(이하 "1회용컵보증금대상사업자"라 한다) 및 1회용 컵 수집·운반사업자 등의 의견을 듣고 처리지원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2. 12. 2.>

[전문개정 2016. 1. 21.]

[제목개정 2022. 12. 2.]

**제12조의4(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 법 제15조의2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용기·1회용 컵(이하 "용기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회수·재사용 또는 재활용을 위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증금대상사업자(이하 "보증금대상사업자"라 한다), 도매업자, 소매업자, 1회용 컵 수집·운반사업자, 1회용 컵 재활용사업자 및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지켜야 할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22. 12. 2.]

**제12조의5(미반환보증금의 산출·사용계획 등)** ① 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미반환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

1. 빈용기의 미반환보증금: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빈용기의 규격별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해당 연도에 출고된 규격별 용기 개수 - 해당 연도에 반환된 규격별 빈용기 개수) × 빈용기의 규격별 자원순환보증금액
2. 1회용 컵의 미반환보증금: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금액  
(해당 연도에 판매된 1회용 컵 개수 - 해당 연도에 반환된 1회용 컵 개수) × 1회용 컵의 자원순환보증금액

② 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별지 제9호서식의 미반환보증금 사용계획 및 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이를 검토한 후 그 적정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16. 1. 21., 2022. 7. 1.>

1. 미반환보증금의 산출 명세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법 제15조의3제1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 비용의 명세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용도로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전년도에 미반환보증금을 법 제15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로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한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결과서

③ 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용기등의 회수·재활용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신설 2016. 1. 21., 2022. 7. 1., 2022. 12. 2.>

1. 자원순환보증금이 제품 가격에 포함된 제품(이하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이라 한다)의 용기등이 회수되지 않고 재활용되는 양
2. 법 제29조에 따른 공동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유리병의 회수·선별 및 재활용지원금 단가

[전문개정 2009. 4. 7.]

[제12조의4에서 이동 <2016. 1. 21.>]

**제12조의6(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보상)** ① 법 제15조의4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소매업자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5만원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 2022. 12. 2.>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액수, 지급기준, 지급시기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 1. 21.]

[제목개정 2022. 12. 2.]

**제12조의7(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자원순환업무를 담당하는 환경부의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1. 환경·법률·경제 등의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④ 환경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등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6. 11.]

**제12조의8(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설립·운영)** ① 법 제15조의6제1항 및 영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보증금대상사업자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공동으로 설립하기 위한 허가신청의 절차에 관하여는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를 준용한다.

② 법 제15조의6제3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2. 12. 2.>

1. 자원순환보증금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사업
2.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사업
3. 조사·연구사업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1회용컵보증금대상사업자에 대한 자원순환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활용 표시 라벨의 제작·공급

③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6. 11.]

**제13조(재활용의무 면제대상 입증)** ① 법 제16조제2항 후단에 따라 재활용의무 면제대상임을 입증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재활용의무 면제대상 확인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매출액·수입액 기준에 따른 재활용의무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액·수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출고·수입량 기준에 따른 재활용의무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포장재의 출고·수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품·포장재의 중량·용량 산출 기초자료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서를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5. 27.]

[중전 제13조는 제13조의2로 이동 <2020. 5. 27.>]

**제13조의2(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법 제16조제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3. 11. 22., 2020. 5. 27.>

[전문개정 2009. 4. 7.]

[제13조에서 이동 <2020. 5. 27.>]

**제14조(제품·포장재의 출고량 등 자료제출)** ① 영 제22조제2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원료”란 법 제16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급하는 원료로서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이하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라 한다)를 말한다.

② 재활용의무생산자는 법 제16조제6항 및 영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출고·수입 실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결산보고서 등 제품·포장재의 출고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수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2. 제품·포장재의 중량·용량 산출 기초자료
3. 다음 각 목의 서류(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가 제품·포장재에 사용된 경우만 해당한다)
  - 가.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가 제품·포장재에 사용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나. 제품·포장재별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 사용량 산출 기초자료

③ 제2항에 따라 실적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출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1. 10.]

**제15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① 영 제24조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유통지원센터의 구성원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에 유통지원센터와의 회수의무 이행 약정서와 유통지원센터의 회수·운반 계획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1., 2013. 11. 22., 2016. 1. 21., 2022. 7. 1.>

1. 회수·재활용 시설(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회수·재활용 시설을 말한다)의 종류 및 용량에 관한 서류
2.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의 회수·운반 계획(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회수·운반 계획을 말한다)
3. 법 제16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재활용을 위탁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영 제24조에 따라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가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09. 12. 31., 2013. 11. 22., 2016. 1. 21., 2022. 7. 1.>

1.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의 회수·재사용 계획
2. 자원순환보증금 반환에 대한 홍보 계획

[전문개정 2009. 4. 7.]

[제목개정 2013. 11. 22.]

**제16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 ①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 승인서는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 11. 22.>

② 영 제25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3. 11. 22.>

1.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2.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준수방법
3. 회수·재활용 수탁자

[전문개정 2009. 4. 7.]

[제목개정 2013. 11. 22.]

**제17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영 제26조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13. 11. 22., 2016. 1. 21.>

1.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준수방법에 관한 증명서류
2. 제2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 관리대장 사본(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관리대장 사본)
3. 회수·재활용 비용 지급명세 등 회수·재활용 실적 증명서류

② 영 제26조에 따라 비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가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09. 12. 31., 2013. 11. 22., 2016. 1. 21., 2022. 7. 1., 2023. 8. 22.>

1. 전년도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의 출고 실적 증명서류
2. 전년도 비용기(다른 비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의 비용기는 제외하되, 다른 비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표준용기는 포함한다) 회수 실적 증명서류
3. 회수된 비용기의 재사용 실적 및 제조 공정에서 파손 등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비용기의 재활용 실적 증명서류
4. 자원순환보증금 및 취급수수료(다른 비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의 비용기에 대하여 지급한 것은 제외하되, 다른 비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표준용기에 대하여 지급한 것은 포함한다) 지급 명세

[전문개정 2009. 4. 7.]

[제목개정 2013. 11. 22.]

**제18조(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 영 제28조제3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2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12. 24., 2020. 5. 27.>

[전문개정 2009. 4. 7.]

**제18조의2(재활용부과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28조제3항 후단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경우는 산출된 재활용부과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고, 연 2회로 똑같이 나누어 내게 하여야 한다.

② 영 제28조제4항 단서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기한은 1회분은 해당 연도 8월 31일까지로, 2회분은 해당 연도 11월 30일까지로 한다.<개정 2013. 11. 22., 2023. 8. 22.>

③ 재활용부과금을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재활용부과금 분할납부신청서를 제17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 함께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3. 11. 22., 2023. 8. 22.>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의 분할납부 신청을 받으면 제18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를 갈음하여 해당 연도 7월 31일까지 별지 제2호의4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 11. 22., 2020.

5. 27.>

[본조신설 2012. 11. 1.]

**제18조의3(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신청 등)** ① 영 제28조의2제4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전에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28조의2제5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통지서로 한다.

③ 영 제28조의2제7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 취소의 통지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통지서로 한다.

[전문개정 2023. 8. 22.]

**제19조(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신고 절차 등)** ①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29.>

1.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결과서 사본(수입신고서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
2. 고형연료제품의 수입가격이 명시된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운반·보관·공급·처리 계획서
  - 가. 고형연료제품의 연간 예상 수입량(제조국·제조업체) 및 공급량(공급업체)
  - 나. 고형연료제품의 국내 반입을 위한 운송수단 및 국내 반입 후 실시할 전수방역 계획(전수방역 계획의 경우 별표 7 제2호의 바이오 고형연료제품 중 성형제품은 제외하며, 별표 7 제2호의 바이오 고형연료제품 중 비성형제품은 제조과정에서 150°C 이상으로 10분 이상 열처리한 후 즉시 밀봉 포장했음을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급한 검역증명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제외한다)
  - 다. 별표 7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고형연료제품의 처리계획
  - 라.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운반·보관·공급·처리 과정에서의 환경오염 방지대책

② 법 제25조의4제2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4서식의 제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29.>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허가증 사본
2.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결과서 사본(제조신고서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
3. 법 제25조의8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의 정기검사 결과서 사본
4.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고형연료제품의 제조·보관·공급·처리 계획서
  - 가. 고형연료제품의 연간 예상 제조량 및 공급량(공급업체)
  - 나. 별표 7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고형연료제품의 처리계획
  - 다. 고형연료제품의 제조·보관·공급·처리 과정에서의 환경오염 방지대책

③ 법 제25조의4제3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신고확인증은 별지 제14호의5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4. 7. 22.]

**제20조(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신고의 변경신고 사항 등)** ① 법 제25조의4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고형연료제품 수입자나 제조자의 상호, 대표자 또는 사업장 소재지
2.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고형연료제품의 종류
3.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고형연료제품의 원재료[종류가 변경되거나 구성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고형연료제품의 연간 예상 수입량 또는 제조량[100분의 30 이상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수입하는 고형연료제품의 제조국 또는 제조업체

② 법 제25조의4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6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29.>

1. 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신고확인증 원본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결과서 사본[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이 있는 경우(제1항제4호의 경우 변경신고일 이전 분기에 법 제25조의5제3항에 따른 확인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만 해당하며, 변경신고서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신고확인증에 변경사항을 적은 후 신고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4. 7. 22.]

**제20조의2(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 등)** ① 법 제2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이란 별표 7에 따른 품질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의5제7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 항목”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말한다.

1. 발열량
2. 수은 함유량
3. 염소 함유량
4. 황분 함유량

③ 법 제25조의5제7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7의2에 따른 품질등급 구분기준을 말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의5제8항에 따라 품질등급을 법 제25조의14제1항에 따른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⑤ 법 제25조의5제7항에 따른 품질등급 구분의 세부 절차 및 방법과 제4항에 따른 품질등급의 공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20. 5. 27.]

**제20조의3(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등)** ①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7서식의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신청서를 법 제25조의15에 따른 폐자원에너지센터(이하 “폐자원에너지센터”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7.>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폐자원에너지센터는 해당 고�형연료제품의 보관장소(수입 고�형연료제품의 경우 최종 선적 전 보관장소를 말한다) 또는 제조시설을 방문하여 시료(試料)를 채취한 후 별표 7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의8서식의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내줘야 한다. 다만, 검사일정의 조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미리 알리고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6. 4. 29., 2020. 5. 27.>

③ 제2항에 따른 시료채취 및 검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4. 7. 22.]

**제20조의4(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수수료)** 법 제25조의5제2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 8에 따라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7. 22.]

**제20조의5(고형연료제품의 품질확인 절차 및 주기 등)** ① 법 제25조의5제3항에 따라 폐자원에너지센터는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확인을 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시료채취의 일시 및 장소 등의 계획을 품질확인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알려야 하거나 사전에 알릴 경우 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 5. 27.>

② 법 제25조의5제3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확인인은 해당 고�형연료제품의 보관장소 또는 제조시설을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한 후 별표 7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검사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료채취 및 검사의 세부 절차·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폐자원에너지센터는 법 제25조의5제3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수입자·제조사 또는 사용자가 보관 중인 고�형연료제품에 대하여 분기마다 1회 이상 확인해야 한다.<신설 2020. 5. 27.>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고�형연료제품 사용자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율(별표 7의2 제2호에 따른 우수등급 이상인 고�형연료제품의 사용비율을 말한다) 이상으로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분기의 품질확인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20. 5. 27.>

[전문개정 2014. 7. 22.]

[제목개정 2020. 5. 27.]

**제20조의6(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방법 등)** ① 법 제25조의6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고�형연료제품에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품질명세서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고�형연료제품의 품질을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0. 5. 27.>

② 법 제25조의6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폐자원에너지센터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계연구원 또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4.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③ 법 제25조의6제2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로부터 시험을 의뢰받은 기관은 해당 고�형연료제품의 보관장소 또는 제조시설을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한 후 그 규격·성상, 원소 성분 함유량 등에 관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4호의9서식의 고�형연료제품 품질명세서에 적어 의뢰인에게 내줘야 한다.<개정 2020. 5. 27.>

④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다시 시험을 의뢰하여 새로 품질명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1.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고�형연료제품의 종류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기존의 품질명세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기존의 품질명세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⑤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품질표시, 시료채취 및 시험의 세부 절차·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4. 7. 22.]

**제20조의7(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변경허가 등)** ① 법 제25조의7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10서식의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8.>

1. 별표 8의2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운영계획서
2. 사용하려는 고�형연료제품에 대한 제20조의6제1항에 따른 품질명세서 사본
3. 법 제25조의8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결과서 사본(제20조의7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고�형연료제품으로 사용연료를 변경하거나 고�형연료제품을 사용연료로 추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증은 별지 제14호의11서식과 같다.<개정 2018. 11. 28.>

③ 법 제25조의7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개정 2018. 11. 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일 것  
가. 시멘트 소성로(燒成爐)

나. 화력발전시설

다. 열병합발전시설

라.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2. 발전시설(제1호나목 및 다목의 발전시설은 제외한다)로서 발전용량이 2메가와트 이상일 것
  3. 지역난방시설, 산업용보일러 또는 제철소의 노(爐)로서 석탄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일 것
  4. 보일러시설(제3호의 산업용보일러는 제외한다)로서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1톤 이상일 것
- ④ 법 제25조의7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신설 2018. 11. 28.>
1. 별표 1 제10호나목의 바이오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같은 호 가목의 일반 고형연료제품을 사용연료로 추가하려는 때
  2. 별표 1 제10호나목의 바이오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같은 호 가목의 일반 고형연료제품으로 사용연료를 변경하려는 때
  3. 고형연료제품의 사용량을 100분의 30 이상 증가시키려는 때(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4.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때
- ⑤ 법 제25조의7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12서식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 또는 고형연료제품 사용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8. 11. 28.>
1.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증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법 제25조의8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정기검사 결과서(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서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에 검사한 것으로 한정한다)
- ⑥ 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증 뒤쪽에 변경사항을 적은 후 신청인에게 되돌려주어야 한다.<신설 2018. 11. 28.>
- ⑦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25조의7제4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증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신설 2018. 11. 28.>
- [전문개정 2014. 7. 22.]  
[제목개정 2018. 11. 28.]

**제20조의8(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사용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법 제25조의8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이란 별표 9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 7. 22.]

**제20조의9(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주기 등)** ① 법 제25조의8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8. 11. 28., 2020. 5. 27.>

1. 최초검사: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또는 사용시설의 설치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실시
2. 계속검사: 제1호의 최초검사 또는 제3호의 변경검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 전 3개월 이내에 실시
3. 변경검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실시
  - 가. 휴업이나 폐업 등의 사유로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또는 사용시설의 운영을 중단하였다가 재개(再開)하는 경우: 그 시설의 운영을 시작하기 전 3개월 이내에 실시
  - 나. 제20조의7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을 변경 내용에 따라 운영하기 전 3개월 이내에 실시

② 법 제25조의8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 13서식의 정기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자원에너지센터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8. 11. 28., 2020. 5. 27.>

1.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또는 사용시설의 설치 명세서(도면을 포함한다)
2.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또는 사용시설의 가동 및 유지·관리 명세서
3. 고형연료제품 제조신고확인증(최초검사는 제외한다) 또는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증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폐자원에너지센터는 해당 시설을 방문하여 그 시설이 별표 9에 따른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의14서식의 정기검사 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검사일정의 조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미리 알리고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6. 4. 29., 2018. 11. 28., 2020. 5. 27.>

④ 제3항에 따른 검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 7. 22.]

**제20조의10(고형연료제품 수입자·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법 제25조의9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0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수입자·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의9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개정 2019. 12. 20.>

1.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처리능력이 시간당 2톤 이상인 경우: 0.1ng-TEQ(독성 등가치)/Sm<sup>3</sup> 이하
2.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처리능력이 시간당 2톤 미만인 경우: 5ng-TEQ/Sm<sup>3</sup> 이하

[본조신설 2014. 7. 22.]

**제20조의11(고형연료제품의 수입·제조·사용 금지명령 등)** ① 법 제25조의10제2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제조 또는 사용 금지나 개선 명령의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 법 제25조의10제2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제조 또는 사용 금지나 개선을 명하려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명령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수입·제조 또는 사용 금지나 개선 명령의 이유 및 내용
2. 수입·제조 또는 사용 금지의 기간이나 개선명령의 이행기간(개선명령의 경우 그 이행결과 조사·확인 예정일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명령의 이행과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

[본조신설 2014. 7. 22.]

**제20조의12(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절차)** ① 법 제25조의13제2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제조자 또는 사용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의15서식의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8.>

1. 고형연료제품의 제조 신고확인증 또는 사용허가증 원본
2. 권리·의무의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고형연료제품의 제조 신고확인증 또는 사용허가증에 변경사항을 적은 후 신고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개정 2018. 11. 28.>

[본조신설 2014. 7. 22.]

**제20조의13(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의 정보입력)** ① 법 제25조의14제2항에 따른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의 정보입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1. 법 제25조의14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정보: 해당 월의 정보 변동 내용을 다음 달 10일까지 입력

2. 법 제25조의14제3호 또는 제4호의 정보: 정보 내용이 변동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입력

② 제1항에 따라 입력하여야 할 정보 중 법 제25조의14제1항제4호의 품질검사 결과 등은 해당 품질검사 결과서를 전자이미지로 변환하여 입력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력의 세부 절차 및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 7. 22.]

**제20조의14(폐자원에너지센터의 운영)** ① 법 제25조의15제3항에 따라 공단은 폐자원에너지센터가 수입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외에 현지 사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폐자원에너지센터의 조직·정원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이나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7. 22.]

**제21조(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 절차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신청서에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3. 11. 22.>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 11. 22.>

④ 삭제 <2013. 11. 22.>

⑤ 삭제 <2013. 11. 22.>

[전문개정 2009. 4. 7.]

**제21조의2** 삭제 <2021. 6. 11.>

**제22조(유통지원센터 설립인가 절차 등)** ①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유통지원센터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유통지원센터 설립인가신청서에 법 제2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유통지원센터의 설립인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유통지원센터 설립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7호의4서식의 유통지원센터 설립인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1. 22.]

**제23조(인가의 취소)** 법 제28조의5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년간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4. 2. 12.]

**제23조의2(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경영공시)** ① 법 제28조의6제1항에 따른 경영공시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② 법 제28조의6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영공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28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결산보고서: 별지 제17호의5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또는 유통지원센터 사업결산보고서

2. 법 제28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총회 및 이사회 활동상황: 별지 제17호의6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또는 유통지원센터 총회 및 이사회 활동상황 보고서

3. 법 제28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결과 보고서: 별지 제17호의7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또는 유통지원센터 사업결과 보고서

[본조신설 2024. 7. 10.]

[종전 제23조의2는 제23조의3으로 이동 <2024. 7. 10.>]

**제23조의3(공동운영위원회 구성·운영)** ① 법 제29조에 따른 공동운영위원회(이하 “공동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공동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공동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공단 소속 직원 중 공단의 이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 유통지원센터의 구성원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이사장
4. 유통지원센터의 이사장
5. 재활용의무생산자 중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6.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회수·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를 대표하는 사람 중 유통지원센터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7. 그 밖에 폐기물의 회수 및 재활용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공동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 21.]

[제2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3조의3은 제23조의4로 이동 <2024. 7. 10.>]

**제23조의4(재생원료의 비율표시 등)** ① 법 제33조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별표 12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② 법 제33조의2에 따라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제품·용기에 표시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할 수 있다.

1. 재생원료 사용임을 나타내는 도안
2. 사용된 재생원료의 종류
3. 재생원료 사용비율

③ 환경부장관은 제품·용기에 표시된 재생원료 사용비율이 제2항에 따라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표시된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재생원료 사용비율 확인 절차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4. 4. 11.]

[제23조의3에서 이동 <2024. 7. 10.>]

**제24조(재활용단지의 조성승인 신청)** ① 영 제41조 전단에 따라 시·도지사가 재활용단지의 조성을 위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활용단지 조성승인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2., 2016. 1. 21.>

1. 재활용단지의 명칭
2. 재활용단지의 조성 목적 및 필요성
3. 재활용단지 조성 대상 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재활용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5. 주요 유치 업종

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단지 조성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조성 대상 지역의 토지이용 현황에 관한 서류
3. 입지 여건의 분석에 관한 서류
4. 사업비의 추정에 관한 서류
5. 지역발전, 주변 환경 및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 또는 도면
6. 지가 상승 및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서류

[전문개정 2009. 4. 7.]

**제25조(재활용단지 조성의 변경승인 대상)** 영 제41조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활용단지의 조성·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재활용단지 면적(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재활용단지의 위치 또는 경계
4. 재활용단지의 조성 사업비 및 자금 조달계획(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09. 4. 7.]

**제25조의2(비축 대상 품목 및 비용 지원)** ① 법 제34조의5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이란 다음 각 호의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9.>

1. 수출용 중고의류
2. 유리 및 유리병류(수거 후 세척된 것으로 한정한다)
3.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1조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물질 또는 물건
4. 그 밖에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비축이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품목

② 법 제34조의5제4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지정사업자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법 제34조의5제3항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등(이하 “재활용가능자원등”이라 한다)의 보관, 운반 등에 드는 비용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본조신설 2021. 6. 11.]

[종전 제25조의2는 제25조의3으로 이동 <2021. 6. 11.>]

**제25조의3(자발적 협약의 이행방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의8에 따른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연도별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현황
2.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재활용을 위한 목표 및 이행기간
3.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목표 이행을 위한 투자계획
4. 그 밖에 자발적 협약의 목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의8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목표 달성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4. 7.]

[제25조의2에서 이동 <2021. 6. 11.>]

**제25조의4(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운영)** ① 법 제34조의10제1항에 따른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매입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2. 재활용가능자원등의 국내외 수급상황, 가격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조사·연구
  3. 재활용시장관리 전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4. 재활용가능자원등의 정보교류를 위한 국제협력
  5. 그 밖에 재활용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의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6. 11.]

**제26조(보고 및 검사 등)**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1. 22., 2014. 2. 12., 2014. 7. 22., 2016. 1. 21., 2019. 12. 24., 2022. 7. 1., 2022. 12. 2., 2024. 4. 11.>

1.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1의2. 법 제9조의제1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구조 기준의 준수 여부 및 같은 조 제2항·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중단명령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1의3. 법 제9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및 평가 결과 표시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10조에 따른 1회용품의 사용 억제와 무상 제공 금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법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산출·부과 및 납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법 제14조에 따른 제조자등의 분리배출 표시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5의2.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의 반환, 취급수수료와 처리지원금의 지급·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5의3. 법 제15조의2제6항에 따른 보증금대상사업자의 자원순환보증금의 환불문구 및 재사용 또는 재활용 표시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법 제15조의2제7항에 따른 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미반환보증금을 해당 용도로 적절하게 사용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법 제18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와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산출·부과 및 납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1. 법 제23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침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11의2. 법 제25조의3에 따른 에너지회수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11의3. 법 제25조의9에 따른 고품연료제품 수입자·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11의4. 법 제25조의10에 따른 고품연료제품의 수입·제조 금지명령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11의5. 법 제25조의12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고품연료제품의 적정 처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2.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장부의 비치·기록·보존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12의2.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제품·재료·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 등을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13. 영 제2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제품·포장재 출고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14.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출고량, 회수·재활용 실적 등을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개정 2009. 4. 7.]

**제27조(장부의 기록·보존)** ①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부과대상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이 기록·보존해야 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 21., 2019. 12. 24., 2022. 7. 1.>

1.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별지 제18호서식의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수입 관리대장 또는 사업장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의 출고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2. 재활용의무생산자(비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장부
    - 가. 별지 제18호서식의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의 제조·수입 관리대장 또는 사업장별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의 출고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 나. 별지 제19호서식의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 관리대장(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하며, 재활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 관리대장 사본)
    - 다.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관리대장(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만 해당한다)
  3.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제품·포장재의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별지 제19호서식의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 관리대장
  4. 비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 별지 제20호서식의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의 출고·반환 관리대장
  5. 재활용지정사업자 중 영 제33조제1호 각 목의 자: 별지 제21호서식의 재활용지정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실적대장
  6.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중 영 제35조제1호 각 목의 자: 별지 제23호서식의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실적대장
  7.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별지 제19호서식의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 관리대장(재활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관리대장 사본)
- ② 제1항에 따른 장부의 보존기간은 마지막 기록을 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장부는 테이프·디스켓 등 전산처리 방법으로 기록·보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4. 7.]

**제27조의2(폐기물부담금 산정·부과 등의 전산처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법 제34조의7제2항에 따른 자원절약 및 재활용촉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송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11. 1., 2013. 11. 22., 2017. 12. 29., 2020. 5. 27.>

1. 제5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의 출고·수입 실적서
- 1의2. 제5조의2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확인서
2. 제7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
3. 삭제 <2012. 11. 1.>
4.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입업자 폐기물부담금 반환청구서
5. 삭제 <2016. 1. 21.>
6. 삭제 <2016. 1. 21.>
7. 삭제 <2016. 1. 21.>
8. 삭제 <2016. 1. 21.>
9. 삭제 <2016. 1. 21.>

[전문개정 2009. 4. 7.]

**제27조의3(운영관리정보체계의 처리사항 등)** 법 제36조의2제1항에서 “재활용의무생산자,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 등의 의무이행과 용기등이나 재활용가능자원의 인계·인수에 관한 정보의 관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 12. 24., 2022. 7. 1., 2024. 4. 11.>

1. 법 제36조의3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등의 관리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 1의2. 제3조의6제2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신청서 제출에 관한 사항
2. 제11조제1항에 따른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제12조의5제2항에 따른 미반환보증금 사용계획 및 실적보고에 관한 사항
4. 제14조에 따른 제품·포장재 출고량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5. 제15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제출에 관한 사항
6. 제17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보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6. 1. 21.]

**제28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 1. 21., 2020. 5. 27., 2022. 7. 1., 2024. 4. 11., 2024. 7. 10.>

1. 제4조 및 별표 2에 따른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2014년 1월 1일
2. 삭제 <2023. 4. 17.>
3.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분할납부 대상 및 기한: 2014년 1월 1일
4. 제8조에 따른 플라스틱 제품·재료·용기의 폐기물부담금 면제를 위한 회수·재활용 방법: 2014년 1월 1일
5. 삭제 <2023. 4. 17.>
6. 삭제 <2023. 4. 17.>
- 6의2. 제12조의2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액: 2016년 1월 1일
7. 제20조의2제1항 및 별표 7에 따른 고품연료제품의 품질기준과 제20조의2제3항 및 별표 7의2에 따른 고품연료제품의 품질등급 구분기준: 2014년 1월 1일
8. 제21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신청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9. 제23조의4제4항에 따른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표시방법: 2024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4. 4. 30.]

**부칙** <제135호,2002. 12. 30.>

-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 가목의 1회용 비닐식탁보, 별표 2 제5호 가목의 1회용 합성수지용기(도시락에 사용된 합성수지용기를 제외한다), 별표 2 제7호의 1회용 응원용품 및 별표 2 제4호의 도·소매업종 약국 및 서점의 1회용품 사용억제와 무상제공금지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 ②(청량음료의 비용기보증금 반환에 관한 특례) 용량 300밀리리터 이상 400밀리리터 미만의 청량음료의 비용기보증금 반환금액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6월 30일까지는 개당 50원으로 한다.

**부칙** <제155호,2004. 4.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호,2004. 12. 10.>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분리배출표시대상 제품·포장재의 지정신청에 관한 적용례) 분리배출표시대상 제품·포장재의 지정신청에 관한 제 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8호,2005. 12. 30.>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호,2006. 6. 29.>

이 규칙은 200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제26조제11호의2 및 별표 6 제1호 아목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호,2006. 11. 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공사로부터 종전의 별표 7에 따른 품질기준 및 규격에 맞추어 고형연료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조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품질·등급기준에 맞추어 고형연료제품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 제조자의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8 제1호 나목에 따라 공사로부터 고형연료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조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8 제1호 바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적합한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 사용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부터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8 제2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고형연료제품 사용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8 제2호 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저장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231호,2007. 3. 28.>

이 규칙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4호,2007. 6. 29.>

이 규칙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2호,2007. 10. 25.>(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4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4항”으로, “동법 제44조의2”를 “같은 법 제46조”로 하며, 제18조의2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제46조”로 한다.

제20조의3제1항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동 규칙 별표 7의2”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으로 하고, 별표 1 제4호라목 및 제5호라목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제6호”를 각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로 하며, 별표 3 제2호가목(4)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의3제4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로 한다.

별표 4 제6호다목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제6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로 하며, 같은 표 제8호다목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제6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로 하며, 같은 표 제9호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제6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로 한다.

별표 8 제2호라목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및 별표 8 제2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별표 11 제2호”로 하고, 서식 14의2 ※ 구비서류란 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제46조”로 한다.

⑧ 부터 ⑩ 까지 생략

### 제13조 생략

**부칙** <제267호,2007. 12. 31.>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8호,2008. 2. 26.>(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호,2008. 3. 3.>(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④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⑦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 <제292호,2008. 6.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04호,2008. 10.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9호,2009. 4.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335호,2009. 6. 30.>(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6호,2009. 6. 30.>(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5조제2항제1호에 해당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340호,2009. 7.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6호,2009. 12. 31.>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0호,2010. 12. 31.>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8호,2011. 10. 28.>(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및 제2호 중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각각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463호,2012. 7. 4.>(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4호,2012. 11. 1.>(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497호,2013. 1.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6, 별표 7 및 별표 8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주기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RPF), 페타이어 고형연료제품(TDF) 및 폐목재 고형연료제품(WCF)의 품질검사를 실시한 제조자에 대해서는 이 규칙 시행일에 품질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아 별표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품질검사의 실시 주기를 적용한다.

**부칙** <제503호,2013. 3. 23.>(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525호,2013. 11. 22.>

이 규칙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5호,2014. 2. 12.>

이 규칙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3호,2014. 4. 30.>(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0호,2014. 6. 5.>(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7호,2014. 7.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사용시설 정기검사에 관한 특례) 제20조의9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또는 사용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는 2015년 7월 22일까지 제20조의9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칙** <제617호,2015. 10.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9호,2015. 12. 22.>(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정비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8호,2016. 1.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6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급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취급수수료를 정할 때까지는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650호,2016. 4.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 중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이 있는 경우(제1항제4호의 경우 변경신고일 이전 분기에 법 제25조의5제3항에 따른 확인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만 해당한다는 부분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신고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 중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이 있는 경우(제1항제4호의 경우 변경신고일 이전 분기에 법 제25조의5제3항에

다른 확인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만 해당한다는 부분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25조의4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3제2항 단서 및 별표 7 제1호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9제3항 단서, 별표 9 제1호바목 및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25조의8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84호,2016. 12. 30.>(일몰규제 정비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729호,2017. 12. 29.>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5호,2018. 1. 17.>(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2호타목1)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⑭부터 ⑳ 까지 생략

**부칙** <제777호,2018. 11.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용 중인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인 보일러시설에 대해서는 제20조의7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2024년 7월 1일 이후에도 해당 보일러시설에서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2024년 6월 30일까지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질소산화물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측정결과가 전산망으로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사용시설의 검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당시 사용 중인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사용시설의 검사기준에 대해서는 별표 9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고형연료제품 수입자·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고형연료제품을 수입·제조 또는 사용 중인 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0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에 적합하도록 하여

야 한다.

**부칙** <제798호,2018. 12. 31.>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5호,2019. 4. 17.>(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④ 생략

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 제2호라목 전단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833호,2019. 12. 20.>(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5호,2019. 12. 24.>

이 규칙은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9호,2020. 5.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주기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9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25조의8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사용시설의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19호,2021. 6.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 제25조의3 및 제25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2호,2021. 9. 16.>(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6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3호,2021.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9호,2022. 3. 31.>(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3호,2022. 7.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7호,2022. 12.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1호,2023. 1.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2호,2023. 4. 17.>(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3호,2023. 4.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1호,2023. 8.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1호,2023. 12. 29.>(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 중 제3호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9조”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1조”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1087호,2024. 4.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8호,2024. 7. 10.>

이 규칙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7호,2025. 4.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4. 4. 11.>

### 재활용제품 (제2조 관련)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제품

- 가. 폐금속류
- 나. 폐산·폐알칼리
- 다. 폐유기용제
- 라. 폐섬유
- 마. 하수·폐수처리 오니(汚泥)
- 바. 공정 오니
- 사. 육가공 잔재물
- 아. 수산물가공 잔재물
- 자. 가축가공 잔재물
- 차. 식물성 잔재물
- 카. 폐유(폐윤활유를 포함한다)
- 타. 폐내화물(廢耐火物) 및 도자기 편류(片類)
- 파. 건설폐자재[토사(土砂), 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및 벽돌을 포함한다]
- 하. 폐전지류
- 거. 폐석고류
- 너. 폐석회류
- 더.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

2. 폐지를 사용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제품

- 가. 폐지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다음의 재생종이 또는 재생종이제품
  - 1) 폐지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40퍼센트 이상 사용한 신문용지 또는 전자복사용지
  - 2) 폐지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30퍼센트 이상 사용한 중질지(中質紙) 또는 백상지(白上紙)
  - 3) 폐지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10퍼센트 이상 사용한 아트지 또는 크라프트지
  - 4) 1)부터 3)까지의 재생종이를 사용한 재생종이제품
- 나. 폐지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다음의 재생판지 또는 재생판지제품
  - 1) 폐지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90퍼센트 이상 사용한 골판지용 골심지
  - 2) 폐지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65퍼센트 이상 사용한 백판지(白板紙)
  - 3) 폐지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50퍼센트 이상 사용한 골판지용 라이너(Liner)
  - 4) 1)부터 3)까지의 재생판지를 사용한 재생판지제품

- 다. 폐지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100퍼센트 사용한 포장용 완충재
- 라. 폐지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50퍼센트 이상 사용한 그 밖의 종이제품
- 3. 폐목재를 사용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제품
  - 가. 폐목재를 중량기준으로 50퍼센트 이상 사용한 나무판제품
  - 나. 삭제 <2013.1.31>
- 4. 폐플라스틱을 사용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제품
  - 가. 폐플라스틱을 중량기준으로 50퍼센트 이상 사용한 성형(成形)제품
  - 나. 폐플라스틱 재생원료(펠릿, 플레이크 등)
    - 다. 폐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80퍼센트(건축자재용인 경우에는 60퍼센트, 필름인 경우에는 50퍼센트, 자동차용인 경우는 25퍼센트) 이상 사용한 성형제품
    - 라. 폐플라스틱을 사용하여 제조한 다음의 유류
      - 1) 석유 또는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물질로 사용하기 위한 열분해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제2호나목1)다)(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2)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유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제2호마목2)가)(2)(가)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마. 삭제 <2013.1.31>
- 5. 폐고무를 사용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제품
  - 가. 재생타이어 및 폐타이어 단순가공제품
  - 나. 폐고무를 분쇄한 고무분말
  - 다. 폐고무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50퍼센트 이상 사용한 제품
  - 라. 폐고무를 사용하여 제조한 다음의 유류와 메탄올
    - 1) 석유 또는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물질로 사용하기 위한 열분해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제2호나목1)다)(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2)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유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제2호마목2)가)(2)(가)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마. 폐타이어 고무분말을 중량기준으로 15퍼센트 이상 사용한 고무아스팔트제품
  - 바. 삭제 <2013.1.31>
- 6. 고로슬래그, 석탄재, 광재, 분진, 연소재, 석분 오니, 소각 잔재물 또는 폐주물사를 사용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제품
  - 가. 고로슬래그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40퍼센트 이상 사용한 토목·건축자재
  - 나. 석탄재, 광재, 분진, 연소재, 석분 오니 또는 소각 잔재물을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40퍼센트 이상 사용한 요업제품

다. 석탄재, 광재, 분진, 연소재, 석분 오니 또는 소각 잔재물을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50퍼센트 이상 사용한 토목·건축자재

라. 폐주물사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60퍼센트 이상 사용한 건축자재

마. 시멘트 대체재로서 석탄재, 고로슬래그를 중량기준으로 시멘트 소요량의 5퍼센트 이상 사용한 레미콘 및 건축자재(시멘트 대체재로 사용되는 석탄재는 KS L 5405 또는 KS L 521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고로슬래그는 KS F 2563 또는 KS L 5210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7. 폐유리를 사용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제품

가. 폐유리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50퍼센트 이상 사용한 유색병 및 원료의 40퍼센트 이상 사용한 무색병

나. 폐유리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50퍼센트 이상 또는 부피기준으로 원료의 70퍼센트 이상 사용한 건축자재

8. 유기성 폐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사료, 비료 또는 퇴비 등의 제품

9. 폐식용유를 사용하여 제조한 다음 각 목의 제품

가. 폐식용유를 주원료로 한 비누제품

나. 폐식용유를 사용하여 제조한 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 31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바이오디젤(BD100), 바이오디젤연료유(BD20) 및 바이오중유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0. 별표 7에 따른 고행연료제품의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한 다음 각 목의 고행연료제품

가. 일반 고행연료제품[SRF(Solid Refuse Fuel)]: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지정폐기물이 아닌 다음의 가연성 고행폐기물을 사용(다음의 폐기물을 서로 혼합하거나 다음의 폐기물과 나목의 바이오 고행연료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폐기물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제조한 것을 말한다.

1) 생활폐기물(음식물류폐기물은 제외한다)

2) 폐합성수지류[자동차 파쇄잔재물(ASR)은 제외한다]

3) 폐합성섬유류

4) 폐고무류(합성고무류를 포함한다)

5) 폐타이어

6) 그 밖에 에너지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가연성 고행폐기물

나. 바이오 고행연료제품[BIO-SRF(Biomass-Solid Refuse Fuel)]: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지정폐기물이 아닌 다음의 가연성 고행폐기

물을 사용(다음의 폐기물을 서로 혼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제조한 것을 말한다.

- 1) 폐지류
  - 2) 농업폐기물(왕겨, 쌀겨, 옥수수대 등 농작물의 부산물을 말한다)
  - 3) 폐목재류(폐가구류 및 제재부산물을 포함하며, 철도용으로 사용된 받침목과 전신주로 사용된 것은 제외한다)
  - 4) 식물성잔재물(땅콩껍질, 호두껍질, 팜껍질, 코코넛껍질, 귤껍질, 커피찌꺼기 등을 말하며, 음식물류폐기물은 제외한다)
  - 5) 초본류 폐기물
  - 6) 그 밖에 에너지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바이오매스(Biomass) 폐기물
11. 그 밖에 재활용가능자원을 사용하여 제조한 것 중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제품

제조·수입·판매 중단기간의 산정기준(제3조의5제1항 관련)

구 분	중단기간
1. 총 개선기간이 1년 이하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포장재·제품의 제조·수입·판매의 중단을 명하는 경우	3개월
2. 총 개선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포장재·제품의 제조·수입 및 판매의 중단을 명하는 경우	6개월
3. 총 개선기간이 2년 초과 3년 이하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포장재·제품의 제조·수입 및 판매의 중단을 명하는 경우	1년

비 고

환경부장관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사업 규모, 사업 지역의 특수성, 해당 제품이 법 제9조의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 표에 따라 산정된 중단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제4조 관련)

시설 또는 업종	대상 1회용품	준수사항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의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가. 1회용 컵(합성수지컵 및 금속박컵 등) 나. 1회용 접시(종이접시, 합성수지접시 및 금속박접시 등) 다. 1회용 용기(종이용기, 합성수지용기 및 금속박용기 등) 라. 1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쭉시개 마. 1회용 수저, 포크 및 나이프 바. 1회용 비닐식탁보 사. 1회용 빨대 및 젓는 막대	사용억제
	아.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자.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한다].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1)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금지.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과점업은 사용억제 한다.

	2)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하여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제품 또는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1회용 합성수지용기.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1) 밀봉포장용기 2) 생분해성수지용기	사용억제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숙박업(객실이 50실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및 목욕장업	가. 1회용 면도기 나. 1회용 칫솔 및 치약 다. 1회용 샴푸 및 린스	무상제공금지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	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1)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2)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	사용억제

	투 나. 1회용 우산 비닐	
	다.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	1회용 응원용품	무상제공금지. 다만,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억제한다.
6.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	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1)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2)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무상제공금지.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 소매업은 사용억제 한다.
	나.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7.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비고

1. 제1호라목 중 이쑤시개는 별도의 회수용기를 갖추고 계산대나 출입구에서만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제1호라목에도 불구하고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같은 법 제36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편의점 사업자가 즉석조리식품, 냉동식품 등의 음식물을 가열만 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1회용 나무젓가락을 사용할 수 있다.
3. 제6호의 도매 및 소매업(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 소매업은 제외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제6호가목에 따른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되가져올 때 판매금액을 환불하거나 장바구니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일정금액을 할인해 주는 방법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혜택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러한 내용의 안내문을 매장 안에 게시하거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고객이 이 사실을 알기 쉽게 해야 한다.

**폐기물배출자의 폐기물의 재활용 및 분리 보관에 관한 기준**(제10조의3제1항 관련)

1.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 가. 공장에서 발생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직접 재활용하거나 재활용하려는 자에게 공급하여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나. 재활용가능자원을 재활용하려는 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는 수거기간 및 발생량을 고려하여 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분리수집용기 또는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그 밖의 시설
  - 가.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영 제14조의6에 해당하는 건물 또는 토지 전체를 점유한 자만 해당한다)
    - 1) 시설 규모 및 폐기물의 발생 형태 등을 고려하여 분리수집이 쉬운 위치에 적정 규모의 분리수집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 2)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수집장소에 적정하게 분리·보관하여야 한다.
    - 3) 분리수집된 재활용가능자원을 직접 재활용하거나 수거기관 또는 재활용하려는 자에게 공급하여 재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 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화처리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의 경우에는 사료·퇴비 등으로 감량화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효율적으로 재활용하는 방법을 마련하여 자원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5) 판매시설, 관람집회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경우에는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나 방문자 등이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배출하도록 안내문을 게시하거나 방송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리수집을 안내·지도하여야 한다.
  - 나. 점유자
    - 1) 점유하고 있는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종이류, 유리병, 캔류, 플라스틱류 또는 고철류 등 분리수거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확보한 분리수집장소로 운반하여 품목별로 분리·보관되도록 배출하여야 한다.
    - 2) 시설에서 다량 배출되는 종이류는 종류에 따라 복사용지(백상지, 중질지, 아트지 및 크라프트지를 포함한다), 신문용지 또는 판지 등으로 분리수집하여야 한다.
    - 3) 재활용 대상이 아닌 폐기물을 재활용 대상 폐기물과 혼합하여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시설에서 배출되는 유리병은 무색, 청색(녹색을 포함한다) 또는 갈색의 3색으로 분리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2. 12. 2.>

자원순환보증금액(제12조의2 관련)

1. 빈용기의 자원순환보증금액

가. 2016년 12월 31일 이전 출고되거나 수입된 빈용기에 적용되는 기준

대상 품목	규격	자원순환보증금액
영 제17조제2항 각 호의 제품	190ml 미만	20원/개
	190ml 이상 400ml 미만	40원/개
	400ml 이상 1,000ml 미만	50원/개
	1,000ml 이상	100원 이상 300원 이하/개

나. 2017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수입된 빈용기에 적용되는 기준

대상 품목	규격	자원순환보증금액
영 제17조제2항 각 호의 제품	190ml 미만	70원/개
	190ml 이상 400ml 미만	100원/개
	400ml 이상 1,000ml 미만	130원/개
	1,000ml 이상	350원/개

2. 1회용 컵의 자원순환보증금액

대상 품목	자원순환보증금액
영 제17조제4항 의 제품	300원/개

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제12조의4 관련)

1. 빈용기의 회수, 재사용 또는 재활용을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

가.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

- 1) 지역별로 빈용기를 회수하기 위한 별도의 수집소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 2) 빈용기에 대한 자원순환보증금 및 취급수수료를 제2호가목에 따른 지급관리체계를 통하여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납부해야 한다.
- 3) 회수된 빈용기를 특별한 이유 없이 파손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 4) 표준용기는 제12조에 따라 등록하여 사용해야 하며, 표준용기가 아닌 용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빈용기의 재사용 촉진을 위하여 세부적인 생산, 회수, 재사용에 관한 계획을 제품 출시 후 3개월 내에 수립하여 회수·재사용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5) 다른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의 표준용기 외의 용기를 회수한 경우에는 해당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에게 이를 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소요되는 비용 및 반환방법 등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6) 환경부장관이 4)에 따라 수립한 생산, 회수, 재사용에 관한 계획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해야 한다.
- 7) 소비자의 빈용기 반환 및 자원순환보증금 환부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제15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홍보 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 8)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와 소비자로부터 빈용기가 파손되거나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원활히 회수될 수 있도록 회수용기의 보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9) 자원순환보증금과 취급수수료의 지급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출고, 회수, 파손 및 신병 투입량 등의 정보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제공해야 한다.

나. 빈용기 취급 도매업자

- 1) 도매업자가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을 공급한 소매점에서 보관 중인 빈용기를 회수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회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소매점과 협의하여 회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2) 회수된 빈용기에 대하여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로부터 지급받은 자원순환보증금 및 소매업자의 취급수수료 전액을 소매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소매점 등과 협의하여 취급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다.
- 3) 소매업자를 거치지 않고 판매된 제품의 빈용기는 도매업자가 직접 회수

해야 한다.

- 4) 회수된 빈용기를 제품의 제조·수입 회사별(표준용기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용량별, 회수경로별(도매업자가 직접 회수하는 경우와 도매업자가 소매업자를 거쳐 회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품별(영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품별을 말한다)로 각각 분류하여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 5) 회수용기 보급 등 빈용기의 원활한 회수를 위한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의 조치에 적극 협조하고, 소매업자에게 이를 홍보하고 안내해야 한다.
- 6) 자원순환보증금 및 취급수수료의 지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원순환보증금포함제품의 판매 및 회수량 등의 정보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제공해야 한다.

#### 다. 빈용기 취급 소매업자

- 1) 판매 중인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과 같은 종류의 빈용기를 영업시간 내에 반환하는 자에게 판매처에 관계 없이 자원순환보증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빈용기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 가) 동일인이 1일 30병을 초과하여 반환하는 경우(초과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없다.
  - 나) 빈용기가 훼손·파손 또는 오염되어 재사용이 어렵거나 자원순환보증금 포함 여부가 확인이 안 되는 경우
- 2) 소비자가 쉽게 빈용기를 반환할 수 있도록 잘 보이는 장소에 반환장소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 3)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점포가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빈용기 반환장소를 지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 4) 회수된 빈용기의 훼손을 방지해야 하며, 해당 빈용기를 제조·수입 회사별, 용량별, 제품별로 분류하여 도매업자 및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거래하는 도매업자와 협의하여 분류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 5)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을 판매할 때에는 제품의 가격과 자원순환보증금액을 소비자용 영수증에 구분하여 표시해야 한다.
- 6) 반환되는 빈용기의 자원순환보증금을 확인하여 지급해야 한다.
- 7) 자원순환보증금 및 취급수수료의 지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제품의 판매 및 회수량 등의 정보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에 제공해야 한다.

## 2. 1회용 컵의 회수 및 재활용을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

### 가. 1회용컵보증금대상사업자

- 1)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을 판매할 때에는 제품의 가격과 1회용 컵의 자원순환보증금액을 소비자용 영수증에 구분하여 표시해야 한다.
- 2) 1회용 컵에 대한 자원순환보증금과 처리지원금을 제3호가목에 따른 지급관리체계를 통하여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납부해야 한다.
- 3) 1회용 컵을 영업시간 내에 반환하는 자에게 판매처에 관계 없이 자원순환보증금 전액을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 컵의 수납 및 자원순환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 가) 자원순환보증금 표시가 없거나 바코드 등이 훼손되어 자원순환보증금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1회용 컵을 반환하는 경우
  - 나) 1회용 컵의 본체 없이 자원순환보증금 표시 라벨만 반환하는 경우
  - 다) 같은 사람이 1일 20개를 초과하여 반환하는 경우(초과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만, 해당 매장에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1회용 컵의 수납 및 자원순환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 라) 내용물이 남아있거나 부속물[뚜껑, 빨대, 컵홀더(cup holder) 등]을 포함하여 1회용 컵을 반환하는 경우
  - 마) 해당 매장에서 1회용 컵을 사용하여 음료류를 판매하지 않는 경우
  - 바) 환경부장관이 동일한 영업표지(브랜드)의 1회용 컵만을 반환받는 매장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매장에서 해당 영업표지가 아닌 1회용 컵을 반환하는 경우
- 4) 소비자로부터 반환받은 1회용 컵은 재질별로 구분하여 보관해야 한다.
- 5) 소비자로부터 반환받은 1회용 컵이 적절하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제3호가목에 따라 지정된 수집·운반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해야 한다.
- 6) 자원순환보증금 및 처리지원금의 지급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판매·반환 수량, 수집·운반사업자에게 인계한 수량 등의 정보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제공해야 한다.

### 나. 1회용 컵 수집·운반사업자

- 1) 반환된 1회용 컵을 회수하는 수집·운반사업자는 1회용컵보증금대상사업자로부터 회수한 1회용 컵을 재질별로 구분하여 제3호가목에 따라 지정된 재활용사업자에게 인계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제공해야 한다.

- 2) 1회용컵보증금대상사업자와 상호 협의하여 회수 주기, 방법 등을 정해야 한다. 다만, 수집·운반사업자는 1회용 컵의 수거를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수거중단 예정일부터 1개월 이전에 해당 1회용컵보증금대상사업자 및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다. 1회용 컵 재활용사업자

- 1) 1회용컵보증금대상사업자 또는 수집·운반사업자로부터 인계받은 1회용 컵을 표준용기와 표준용기가 아닌 1회용 컵으로 구분하여 재질별로 선별해야 하며, 재활용 방법이 다른 재활용품과 혼합해서는 안 된다.
- 2) 1회용 컵을 재활용할 때에는 별표 6에 따른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제공해야 한다.

3.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준수사항

가.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의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의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자적 방식의 정보관리 및 자금이체 등이 가능한 지급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

나. 부당한 방법으로 자원순환보증금, 취급수수료 또는 처리지원금을 과도하게 지급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정산하고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다. 1회용 컵을 적절하게 수집·운반할 수 있는 수집·운반사업자와 재질별로 재활용할 수 있는 재활용사업자를 각각 지정해야 한다.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제13조의2 관련)

1. 종이팩: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할 것
  - 가. 화장지, 완충재, 상자 등의 종이제품 제조
  - 나. 재생종이 또는 재생판지의 제조
  - 다. 건축자재 또는 성형제품의 제조
  - 라.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
2. 유리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할 것
  - 가. 폐유리병을 세척하여 재사용
  - 나. 폐유리병을 사용한 토목·건축자재 또는 유리제품의 제조
  - 다. 폐유리병을 사용한 유리분말 등 재생원료 제조
  - 라.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
3. 금속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할 것
  - 가. 폐금속캔을 압축하거나 파쇄하여 금속원료로 제조
  - 나. 포장재로 재사용
  - 다.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
4.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되, 폐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를 수출하는 양이 총 재활용량의 20퍼센트 이하일 것
  - 가. 폐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를 사용한 재생원료 제조(다만, 플러프, 플레이크는 세척한 것만 해당한다)
  - 나. 폐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를 사용한 성형제품 제조
  - 다. 포장재로 재사용
  - 라.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
5. 발포합성수지재질 제품·포장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할 것
  - 가. 폐발포합성수지를 사용한 재생원료 제조
  - 나. 폐발포합성수지를 사용한 성형제품 제조
  - 다. 폐발포합성수지를 사용한 내화제품 또는 섬유코팅제품 제조
  - 라. 발포합성수지재질 제품·포장재로 재사용
  - 마.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
6. 합성수지재질 제품·포장재(제4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되, 라목 및 마목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양의 합계가 총 재활용량의 70퍼센트 이하일 것
  - 가. 폐플라스틱을 사용한 재생원료 제조[영 제18조제1호카목의 제품 포장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경우에는 탈유(脫油)만 한 것도 해당한다]

나. 폐플라스틱을 사용한 성형제품 제조

다. 유류 제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에 따른 폐유를 정제 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라. 폐플라스틱을 중량기준으로 60퍼센트 이상 사용한 별표 7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한 일반 고형연료제품 중 성형제품의 제조[저위발열량은 킬로그램(kg)당 6천킬로칼로리(kcal) 이상이어야 한다]

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에너지 회수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

바. 합성수지재질 제품·포장재로 재사용

사. 용광로 환원제, 코크스(다공질 고체 탄소 연료)로 가스화원료, 가스(수소 및 일산화탄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가스를 얻기 위한 시설에서 얻어진 것으로 한정한다) 제조

아.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

7. 전지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운반 시 전지류가 폭발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재활용할 것

가. 전지의 화학반응을 위하여 사용된 금속물질은 제품 생산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할 것. 다만, 리튬전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에 따라 회수·재활용한 금속물질을 제외한 잔재물[고철, 합성수지, 전해액, 공정 오니, 분진, 광재(금속을 분리하고 난 찌꺼기를 말한다) 및 리튬전지의 파쇄물 등을 말한다]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7호의 폐기물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용출(溶出)시험 결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시설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2)에 따른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할 것

물질	용출액 기준
납 또는 그 화합물	1리터당 3밀리그램(3mg/l) 이상
수은 또는 그 화합물	1리터당 0.005밀리그램(0.005mg/l) 이상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1리터당 0.3밀리그램(0.3mg/l) 이상

다.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을 통하여 나목의 기준에 대한 용출시험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시험 결과서를 통보일부터 3년간 보관할 것

8. 타이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되, 바목의 방

- 법으로 재활용하는 양이 총재활용량의 70퍼센트 이하일 것
- 가. 페타이어 단순가공제품 제조
  - 나. 페타이어를 사용한 재생원료(고무분말 등) 제조
  - 다. 페타이어를 사용한 유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에 따른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제조
  - 라. 페타이어를 사용한 메탄올 제조
  - 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에너지 회수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
  - 바. 시멘트 제조시설의 소성로에서 처리하거나 별표 7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한 일반 고품연료제품으로 재활용
  - 사. 페타이어를 매립장의 차수재(遮水材)로 이용
  - 아.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
9. 윤활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에 따른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의 기준에 적합한 유류를 제조할 것
10. 형광등: 재활용을 위한 수집·운반 시 형광등이 파손되어 수은이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재활용할 것
- 가. 형광등에 들어 있는 수은은 금속수은이나 수은화합물 형태로 회수할 것
  - 나. 형광등에서 회수한 유리, 알루미늄, 플라스틱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7호의 폐기물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용출시험 결과 수은 함유량이 용출액 1리터당 0.005밀리그램(0.005mg/L) 미만일 것
  - 다.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을 통하여 나목의 기준에 대한 용출시험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시험 결과서를 통보일부터 3년간 보관할 것
  - 라. 형광등의 유리는 유리분말 등 유리제품 원료를 제조하거나 유리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할 것
11.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발광다이오드칩, 칩 장착용 보드 및 그 밖의 부분품을 구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할 것
- 가. 합성수지 및 유가금속(有價金屬) 등은 재생이용 할 수 있는 상태로 회수하거나 재생원료로 제조하고, 그 잔재물은 안전하게 처리
  - 나.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
1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할 것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제20조의2 관련)

1. 일반 고형연료제품[SRF(Solid Refuse Fuel)]

구분		단위	성형		비성형	
모양 및 크기		mm	직경	50 이하	가로	50 이하
			길이	100 이하	세로	50 이하
발열량		kcal/kg	수입 고형연료제품: 3,650 이상 제조 고형연료제품: 3,500 이상			
수분 함유량		wt.%	15 이하		25 이하	
금속 성분	수은(Hg)	mg/kg	1.0 이하			
	카드뮴(Cd)		5.0 이하			
	납(Pb)		150 이하			
	비소(As)		13.0 이하			
회분 함유량		wt.%	20 이하			
염소 함유량		wt.%	2.0 이하			
황분 함유량 (페타이어만으로 제조한 경우)		wt.%	0.6 이하 (2.0 이하)			

비고

1. 발열량은 저위발열량으로 환산한 기준을 적용한다.
2. 금속성분, 회분 함유량, 염소 함유량 및 황분 함유량은 건조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3. 성형제품은 펠릿으로 제조한 것을 말하며, 사용자가 주문서 또는 계약서 등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길이를 100mm 초과하여 제조할 수 있다.
4. 비성형제품으로서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같은 부지에서 제조하는 경우에는 체 구멍의 크기가 가로 120mm, 세로 120mm 이하(체 구멍이 원형인 경우 면적이 14,400mm<sup>2</sup> 이하)인 체에 통과시켰을 때 무게 기준으로 제품의 95퍼센트 이상이 통과할 수 있는 것으로 제조할 수 있다.

2. 바이오 고형연료제품[BIO-SRF(Biomass-Solid Refuse Fuel)]

구분	단위	성형		비성형	
모양 및 크기	mm	직경	50 이하	가로	120

					이하 120 이하
		길이	100 이하	세로	
발열량		kcal/kg	수입 고형연료제품: 3,150 이상 제조 고형연료제품: 3,000 이상		
수분 함유량		wt.%	10 이하	25 이하	
금속 성분	수은(Hg)	mg/kg	0.6 이하		
	카드뮴(Cd)		5.0 이하		
	납(Pb)		100 이하		
	비소(As)		5.0 이하		
	크로뮴(Cr)		70.0 이하		
회분 함유량		wt.%	15 이하		
염소 함유량		wt.%	0.5 이하		
황분 함유량		wt.%	0.6 이하		
바이오매스		wt.%	95 이상		

#### 비고

1. 발열량은 저위발열량으로 환산한 기준을 적용한다.
2. 금속성분, 회분 함유량, 염소 함유량 및 황분 함유량은 건조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3. 성형제품은 펠릿으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4. 바이오매스 함유량은 고형연료제품의 함유 성분 중에서 수분과 회분을 제외한 나머지 성분 중 바이오매스의 비율을 말한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의2] <신설 2020. 5. 27.>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 구분기준(제20조의2제3항 관련)

1. 고형연료제품 품질기준항목별 평가점수

가. 일반 고형연료제품

품질기준항목	단위	평가점수		
		3점	2점	1점
(저위)발열량 (수입제품의 경우)	kcal/kg	≥6,000 (≥6,150)	≥5,000 (≥5,150)	≥3,500 (≥3,650)
수은 함유량	mg/kg	≤0.2	≤0.5	≤1
염소 함유량	wt.%	≤0.5	≤1	≤2
황분 함유량 (페타이어만으로 제 조한 경우)	wt.%	≤0.2 (≤1.6)	≤0.4 (≤1.8)	≤0.6 (≤2.0)

나. 바이오 고형연료제품

품질기준항목	단위	평가점수		
		3점	2점	1점
(저위)발열량 (수입제품의 경우)	kcal/kg	≥3,600 (≥3,750)	≥3,300 (≥3,450)	≥3,000 (≥3,150)
수은 함유량	mg/kg	≤0.1	≤0.3	≤0.6
염소 함유량	wt.%	≤0.1	≤0.3	≤0.5
황분 함유량	wt.%	≤0.05	≤0.1	≤0.6

2.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 구분기준

품질등급	구분기준
최우수	4개 품질기준항목의 평가점수의 합계가 10점 이상
우수	4개 품질기준항목의 평가점수의 합계가 8점 이상 10점 미만
양호	4개 품질기준항목의 평가점수의 합계가 4점 이상 8점 미만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21. 9. 16.>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수수료** (제20조의4 관련)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수수료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준하여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라 공단의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항 목	산 정 기 준
인건비	엔지니어링 기술자 임금단가 중 "건설 및 기타" 부문을 적용하며, 중급기술자 2명의 임금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출장비	현지 확인을 한 경우만 해당하며,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여비를 적용한다.
모든 경비	인건비의 50% 이내로 한다.
검사비	검사장비의 사용 비용, 재료비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운영계획서의 포함 사항(제20조의7제1항제1호 관련)

1.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구분
2.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개요
  - 가. 사업자명, 대표자명,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설치예정지 주소
  -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작 예정일 및 운영기간
  - 다.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용량 및 설치 부지면적
  - 라. 일일 가동 시간 및 연간 가동 일수
3. 고형연료제품의 사용·보관·처리계획
  - 가. 고형연료제품의 종류, 공급 업체명 및 업체별 공급 계획량, 공급 계약기간
  - 나. 별표 7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고형연료제품의 처리계획
  - 다. 고형연료제품의 사용·보관·처리 과정에서의 환경오염 방지대책
4. 에너지 이용계획: 사용시작 예정일부터 5년간의 연도별·용도별 고형연료제품 사용계획
5. 방지지설 설치계획
  - 가.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지설 설치내역서, 일반도 및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 나.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지설 설치내역서, 일반도 및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6. 주변 환경보호 및 주민생활 관련 계획
  -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주변지역 환경보호 계획
  - 나.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 또는 주민지원 계획
  - 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결과,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정기검사 결과 등 시설 운영 관련 정보공개 계획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사용시설의 검사기준**(제20조의8 관련)

1.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사용시설 공통의 검사기준

가. 고형연료제품의 원재료인 폐기물의 투입·저장·이송 등의 과정에서 생기는 침출수가 시설 외부로 새거나 지하로 침투하지 않는 구조일 것  
나. 폐기물 또는 고형연료제품으로 인하여 시설이나 설비가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않는 재질일 것

다. 폐기물 또는 먼지 등의 비산(飛散)이 우려되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거나 먼지 등을 포집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라. 시설 전체나 각 설비가 화재 발생에 대비한 구조로 되어 있고, 연소감지 센서 및 방재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마. 해충의 발생이나 유입·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바. 고형연료제품을 보관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할 것

1)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시멘트 또는 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3면 이상의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 또는 구조물(사일로, 지하피트 등)일 것

2) 서로 다른 종류의 고형연료제품이거나 같은 종류라도 서로 다른 제조 시설에서 제조된 고형연료제품을 함께 보관하는 경우 제품이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구획을 나누어 보관하거나 칸막이 등을 설치할 것

3) 시설 내부의 온도가 급격히 상승할 경우 고형연료제품을 신속하게 외부로 반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거나 비활성기체 주입장치 등 발화 억제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4) 시설 내부의 온도 및 상부의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기록·보관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다만, 환기가 가능한 구조인 경우에는 온도 및 일산화탄소 농도 측정·기록·보관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5) 고형연료제품의 보관량이나 반입량·반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사.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시설 또는 사용시설에서 고형연료제품 제조 또는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저감할 수 있을 것

## 2. 고품연료제품 제조시설의 검사기준

### 가. 제조능력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제6호·제7호에 따른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시설기준을 충족하고, 별표 7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 고품연료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기능·용량을 갖추고 있을 것

### 나. 계량시설

제조시설로 반입되는 폐기물의 중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다만, 외부 공인계량소에서 계량하여 계량증명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반입시설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을 통한 폐기물 반입 작업이 용이한 구조일 것

### 라. 저장시설

1) 제조시설 내 폐기물 저장시설의 경우 휴일 및 시설 가동중지일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제5호에 따른 최소 10일 분 이상의 저장용량을 갖추고 있을 것. 다만, 제조시설 외부에 별도의 저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자체하중(自體荷重), 적재하중(積載荷重), 지진력(地震力) 및 온도응력(溫度應力)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일 것

3) 저장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 마. 투입시설

1) 일정량의 폐기물을 시설 내부에 연속적으로 투입·조절할 수 있는 구조일 것

2) 투입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 바. 이송시설

1) 폐기물 및 고품연료제품이 연속적으로 이송되고, 이송과정에서 넘침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위 시간 당 이송량을 조절할 수 있는 구조일 것

2) 폐기물 및 고품연료제품의 이송과정에서 유기물 부착, 정체, 낚, 탈리(脫離) 등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사. 파쇄·분쇄·절단시설

- 1) 파쇄·분쇄·절단시설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폐기물을 정량 투입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2) 파쇄·분쇄·절단 규격의 조정 및 소모품(파쇄 칼날 등)의 교체가 용이한 구조일 것

아. 선별시설

- 1) 제조하려는 고품연료제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선별(입도선별, 풍력선별, 자력선별, 비철금속선별, 광학선별 등)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2) 선별된 후 발생하는 불연물 등의 잔재물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자. 건조시설

- 1) 필요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가열장치 및 제어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 2) 시설 내부의 가스온도를 측정·기록하기 위한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 3) 시설 외부의 표면온도를 80℃ 이하로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 외부를 내열도료(塗料)로 도색하거나 단열처리 하였을 것
- 4) 배기구로부터 배출되는 배기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차. 성형시설

- 1) 별표 7에 따른 품질기준 중 모양 및 크기 기준에 맞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구조일 것
- 2) 성형을 마친 고품연료제품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카. 포장시설

- 1) 고품연료제품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2) 고품연료제품의 단위 포장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타. 환경오염 방지시설

- 1) 고품연료제품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및 수질오염물질 등을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 이내로 처리할 수 있을 것

2) 고품형연료제품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소음·진동관리 법」 제7조에 따른 공장 소음·진동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저감할 수 있을 것

### 3. 고품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검사기준

가. 사용하는 고품형연료제품의 에너지(열, 전기 등) 전환율을 자동 측정·기록·보관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나. 사용하는 고품형연료제품에 대하여 충분히 연소가 가능한 구조이며, 고품형연료제품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등을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 이내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을 것

다. 그 밖에 고품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세부 검사기준에 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고형연료제품 수입자·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제20조의10제1항 관련)

1. 고형연료제품 보관·운반과정에서의 준수사항

- 가. 성상이 서로 다른 고형연료제품은 분리하여 보관하고, 악취가 발생하거나 먼지 등이 흩날리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할 것
- 나. 고형연료제품의 보관시간을 최소화하여 지속적인 온도 상승에 의한 자연발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것
- 다. 고형연료제품 더미는 붕괴 등에 따른 안전사고 및 화재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것
- 라. 고형연료제품은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 또는 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3면 이상의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할 것. 다만, 보관창고를 갖추고 추가로 실외 또는 개방된 장소에서 고형연료제품을 보관해야 경우에는 고형연료제품을 포장하여 빗물이 침투되지 않고 악취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 마. 고형연료제품을 폐쇄된 장소에서 보관할 경우 보관시설 내부의 온도 및 일산화탄소 농도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항목을 주기적으로 측정·기록할 것
- 바. 고형연료제품 운반차량은 차량 옆면에 고형연료제품의 종류,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명 등의 제품정보를 확인이 가능하도록 부착하고, 고형연료제품을 밀폐하거나 덮개를 설치하여 운행 중에 비산먼지 또는 악취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

2.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사용시설 운영과정에서의 준수사항

- 가. 고형연료제품의 원재료인 폐기물에서 생기는 침출수나 악취가 폐기물 저장시설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나.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사용 과정에서 먼지 등이 흩날리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할 것
- 다. 삭제 <2015.12.22.>
- 라.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다이옥신 배출량을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10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검사결과가 제20조의10제2항 각 호의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즉시 해당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마. 라목에 따라 사용을 중지한 고행연료제품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개선조치를 한 후 라목에 따른 측정기관에서 다이옥신 배출량을 측정한 결과가 제20조의10제2항에 따른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이내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고행연료제품 사용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것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제조 또는 사용 금지나 개선명령의 기준

(제20조의11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따른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수입·제조 또는 사용 금지명령 등의 기준은 최근 1년간 위반행위로 수입·제조 또는 사용 금지명령 등을 통보받은 자가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수입·제조 또는 사용 금지명령 등을 통보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금지명령 통보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라.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수입·제조 또는 사용 금지명령의 기간을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수입·제조 또는 사용 금지나 개선명령의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25조의5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1) 법 제25조의5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제5호의 사항에 관한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25조의5제1항제3호	법 제25조의10 제2항	경고	금지명령 1개월	금지명령 3개월
		경 고	개선명령	개선명령

의 사항에 관한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	--	--	--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기준(제23조의3제1항 관련)

사용되는 재생원료	적 용 대 상	사용비율
1. 제1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재생원료	가. 식품용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10퍼센트
	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20퍼센트
	다. 그 밖의 제품·용기	10퍼센트
2. 제1호 외의 재생원료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용기	1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명령서

명령번호 제		호
대상자	상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대상제품	포장재 재질·구조	제품명
	위반사항	
개선명령 내용	개선명령 이행기간	
	개선명령의 구체적 내용	
	사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명령을 통보합니다.

이 명령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환경부장관 직인

## 개선명령 이행계획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	------

제출인	상 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이행계획	포장재 재질·구조	제품명	이행방법	이행 완료 예정 일자	비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3제2항에 따라 개선명령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 장관 귀하

## 개선기간 연장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상 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	개선명령번호	당초 개선명령 이행기간	변경 개선명령 이행기간
	연장신청 사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의 이행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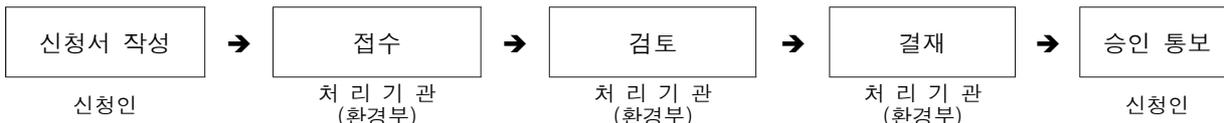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 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연장신청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 처리절차



## 포장재 · 제품의 제조 · 수입 · 판매 중단명령서

명령번호 제 호		
대상자	상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중단명령 내용	중단명령기간	
	포장재 재질 · 구조	
	제품명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포장재 · 제품의 제조 · 수입 · 판매 중단을 명령합니다.

이 명령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환경부장관 직인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 <개정 2024. 4. 11.>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시스템(www.iepr.or.kr)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상 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	① 포장재 종류	② 포장재 재질·구조	
	③ 자체평가 결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6제2항에 따라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포장재 재질·구조 자체평가 결과 1부 2. 포장재 재질·구조 자체평가 결과에 관한 증빙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 작성요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기준의 세부기준이 별도로 설정된 포장재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예시) 종이팩, 유리병
- 포장재별 몸체/라벨/마개 및 잡자재(雜資材)의 각 종류가 드러날 수 있도록 기재합니다.  
(예시) 00몸체 00라벨 00마개
- ②에 따라 구분한 포장재 재질·구조 자체평가 결과를 적습니다.  
(예시) 재활용 최우수, 재활용 우수, 재활용 보통, 재활용 어려움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서

평가 결과서 번호 제 호

신청인	상 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	포장재 종류	포장재 재질·구조
	자체평가 결과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

구성항목	평가 결과	평가 등급
몸 체		
라 벨		
마개 및 잡자재		
총 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6제3항에 따라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직인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7서식] <개정 2024. 4. 11.>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시스템(www.iepr.or.kr)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상 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	① 포장재 종류	② 포장재 재질·구조	
	③ 자체평가 결과		
	④ 평가 결과	⑤ 평가 결과서 번호	
이의신청 내용	내용(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지면이 부족할 경우 첨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6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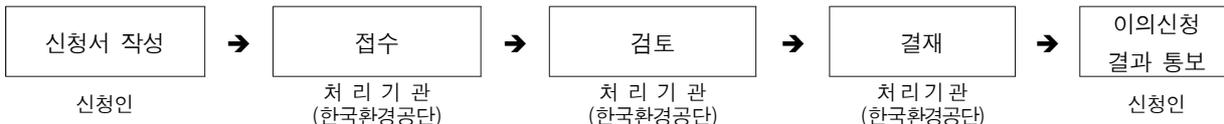
###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이의신청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 작성요령

- ① ~ ④ 이의신청하려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6서식의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서에 기재된 사항과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 ⑤ 이의신청하려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6서식의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서 번호를 기재합니다.

#### 처리절차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8서식] <개정 2024. 4. 11.>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시스템(www.iepr.or.kr)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 표시 기한 연기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상 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	평가 결과서 번호	당초 표시 기한	변경 표시 기한
	연기신청 사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7제2항에 따라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 표시 기한의 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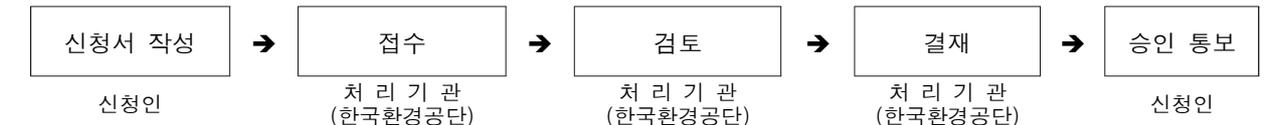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연기신청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 처리절차



##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 출고 실적서

※ 폐기물부담금시스템(<http://www.budangum.or.kr>)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앞쪽)

제출인	상 호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개인사업자) 생년월일	

폐기물 부담금 산출 명세	① 제품명	② 수량	출고단위 (kg,L,개,원)	③ 폐기물부담금 금액	④ 부담금 납부금액(원) (② × ③)	⑤ 연간 총매출액(천원)

플라스틱제품의 경우	⑥ 감면조건	⑦ 감면액(원)	⑧ 감면 후 부담금 납부금액(원) (④ - ⑦)
	[ ]10억원 [ ]10,000kg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 출고 실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제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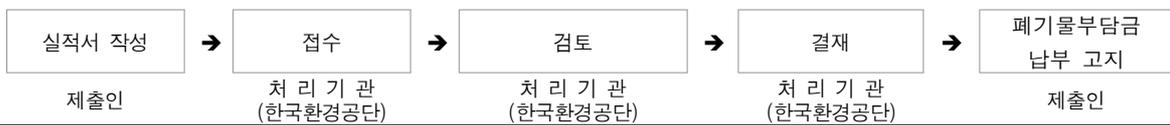
한국환경공단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결산보고서 등 제품·재료·용기 출고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제품별 폐기물부담금 산출 기초자료(플라스틱제품의 경우에는 합성수지투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	--	-----------

### 작성요령

- ①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제품명을 적되, 제품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②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의 수량을 적습니다.
- ③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제품에 대한 부담금 금액을 적습니다.
- ④ 부담금 납부금액은 대상 제품의 수량에 부담금 금액을 곱한 액수를 적습니다.
- ⑤ 연간 총매출액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자만 적습니다.
- ⑥ 플라스틱제품에 대하여만 제조업자가 원하는 감면조건을 적습니다.
- ⑦ "⑥번"에서 선택한 감면조건에 따라 플라스틱 투입량에 해당하는 감면액을 적습니다.
- ⑧ "④번"의 부담금 납부금액에서 "⑦번"의 감면액을 감하여 실제로 납부하게 되는 부담금 금액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 수입 실적서

※ 폐기물부담금시스템(<http://www.budamgum.or.kr>)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수입자 (화물주)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개인사업자) 생년월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수입대행자	상호			무역업 고유번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세관수입 신고번호	① 관세통합품목 분류표(HSK)	② 제품명 및 규격	수량	단위 (kg, l, 개, 원)	단가(원)	연간 수입금액(원)
플라스틱제품 의 경우	③ 합성수지 투입량(kg)			④ 감면조건 [ ] 미화 9만달러 [ ] 3천kg		

「자원의 순환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 수입 실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한국환경공단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최초로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수입승인서 또는 수입신고서의 사본 1부 3. 제품·재료·용기의 용량, 가격 및 재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플라스틱제품의 경우에는 합성수지 투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 작성요령

- 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이 되는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통합품목분류표(HSK: Harmonized System Korea Number)의 품목번호 10자리를 적습니다.
- ②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이 되는 수입 제품명 및 규격을 적되, 제품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③ 플라스틱제품에 대하여만 합성수지 투입량을 적습니다.
- ④ 플라스틱제품에 대하여만 수입업자가 원하는 감면조건을 적습니다.

##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확인서

※ EPR([www.epr.or.kr](http://www.epr.or.kr))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인	상호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개인사업자) 생년월일

폐기물 부담금 면제대상 산출 명세	① 품목명	② 출고·수입량	③ 출고·수입단위 (kg, L, 개, 원)	④ 연간 플라스틱제품 총 매출액(원)·총 수입액(달러)

⑤ 면제 사유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한국환경공단 귀하

첨부서류	1.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품별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산출 기초자료(플라스틱제품의 경우에는 합성수지투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자 확인 사항	사업자등록증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작성방법

-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이 되는 품목명을 적되, 품목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플라스틱제품 중 폐기물부담금 면제 사유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 폐기물부담금 대상이 되는 제품의 출고·수입 단위를 적습니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플라스틱제품 총매출액을 적고,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플라스틱제품 총수입액을 [수입항 도착가격(C.I.F) 기준 미화 달러]로 적습니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면제 사유를 적습니다.

산 출 근 거

- 폐기물부담금(제조업자) 고지서 원본(세입징수관용)  
 재 활용 용 부 과 금

납부번호			
회계연도	회계	징수관 계좌	소관
납부자	업체명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납기내 납부기간	년 월 일		원
			원
			원
		납기내 금액	원

납기후 납부기한	년 월 일		원
		납기후 금액	원

년                      월                      일  
 세입징수관:



170mm×105mm(전산용지)

산 출 근 거

폐기물부담금(제조업자)      고지서 겸 영수증(납입자용)  
 재활용부과금

납부번호			
회계연도		회계	징수관계좌
		소관	
납부자	업체명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납기내 납부기간	년 월 일		원
			원
			원
		납기내 금액	원

납기후 납부기한	년 월 일		원
		납기후 금액	원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고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납인

년      월      일

인

은행  
우체국

170mm×105mm(전산용지)

산 출 근 거

폐기물부담금(제조업자) 영수확인 통지서(세입징수관 사후결의용)  
 재활용부과금

납부번호				
회계연도		회계	징수관 계좌	소관
납부자		업체명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납기내 납부기간	년 월 일		원
			원
			원
		납기내 금액	원

납기후 납부기한	년 월 일		원
		납기후 금액	원

세관징수관 귀하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수납인  
우체국

170mm×105mm(전산용지)

산 출 근 거

폐기물부담금(제조업자)

납부서(한국은행용)

재 활용 용 부 과 금

납 부 번 호			
회 계 연 도	회 계	징수관 계좌	소 관
납 부 (성 명)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자 주 소			

납 기 내 납부기간	년 월 일		원
			원
			원
		납 기 내 금 액	원

납 기 후 납부기한	년 월 일		원
		납 기 후 금 액	원

한국은행장 귀하

위 금액을 수납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우체국

수납인

170mm×105mm(전산용지)

산 출 근 거

폐기물부담금(수입업자) 고지서 원본(세입징수관용)

납부번호			
회계연도	회계	징수관계좌	소관
납부자	업체명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수입신고(수입승인)번호		품목	
--------------	--	----	--

납기내 납부기간	년 월 일		원
			원
			원
		납기내 금액	원

납기후 납부기한	년 월 일		원
		납기후 금액	원

년      월      일

세입징수관:

( 직인 )

170mm×105mm(전산용지)

산 출 근 거

□ 폐기물부담금(수입업자)      고지서 겸 영수증(납입자용)



납부번호			
회계연도	회계	징수관 계좌	소관
납부자	업체명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수입신고(수입승인)번호		품목	
--------------	--	----	--

납기내 납부기간	년 월 일		원
			원
			원
		납기내 금액	원

납기후 납부기한	년 월 일		원
		납기후 금액	원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고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  
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인

수납인

은행  
우체국

170mm×105mm(전산용지)

산 출 근 거

□ 폐기물부담금(수입업자) 영수확인 통지서(세입징수관 사후결의용)



납부번호			
회계연도	회계	징수관 계좌	소관
납부자	업체명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수입신고(수입승인)번호		품목	
--------------	--	----	--

납기내 납부기한	년 월 일		원
			원
			원
		납기내 금액	원

납기후 납부기한	년 월 일		원
		납기후 금액	원

세입징수관 귀하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우체국



170mm×105mm(전산용지)

산 출 근 거

폐기물부담금(수입업자)      납부서(한국은행용)

납부번호			
회계연도	회계	징수관 계좌	소관
납부자	업체명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수입신고(수입승인)번호		품목	
--------------	--	----	--

납기내 납부기한	년 월 일		원
			원
			원
		납기내 금액	원

납기후 납부기한	년 월 일		원
		납기후 금액	원

한국은행장 귀하

위 금액을 수납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우체국

수납인

170mm×105mm(전산용지)

## 폐기물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

※ 폐기물부담금시스템(<http://www.budamgum.or.kr>)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인	상 호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개인사업자) 생년월일
분할납부 신청사항	품목		폐기물부담금

	기 별	납부일자	납부금액	비고
분할납부하려는 횟수 및 금액	제 1기	5월 20일		
	제 2기	7월 20일		
	제 3기	9월 20일		
	제 4기	11월 20일		

「자원의 순환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4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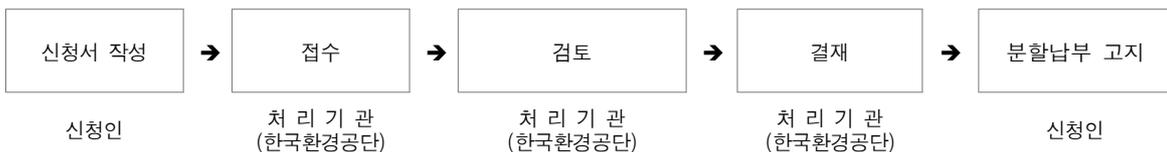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귀하

### 처리절차



## 플라스틱 제품 등의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서

제출인	상호	전화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재활용 이행결과 (단위:kg,ℓ,개)	① 품목	② 출고량·수입량	③ 재활용실적	④ 재활용방법	재활용수탁자 및 소재지 (위탁의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폐기물 부담금 면제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귀하

첨부서류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플라스틱 제품·재료·용기의 출고·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 1부 2. 플라스틱 제품 등의 회수·재활용 관리대장 1부 3. 그 밖에 회수·재활용실적을 확인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 작성요령

- 플라스틱 제품·재료·용기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예:PE관, 전력선)
- 재활용한 플라스틱 제품·재료·용기의 출고량 또는 수입량을 적습니다.
- 재활용한 플라스틱 제품·재료·용기의 재활용량을 적습니다.
- 재활용의 구체적인 방법(예: 재생원료, 다른 제품의 원료)을 적습니다.

## 플라스틱 제품·재료·용기의 회수·재활용 관리대장

플라스틱 제품·재료·용기:

(단위: kg, ℓ, 개)

연 월 일	① 회 수 내 용		처 리 내 용					④ 보관량
	업 체 명	회 수 량	② 재 활 용		③ 그 밖 의 사 항			
			방법 및 기준	재 활 용 량	업체명	처 리 방 법	처리량	

**<작성요령>**

관리대장은 재활용업자가 플라스틱 제품·재료·용기별로 분리하여 작성합니다.

- ① 재활용 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거한 업체명, 회수량을 적습니다.
- ② 재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예: 재생원료, 다른 제품의 원료)을 적습니다.
- ③ 선별 시 발생한 쓰레기 또는 재활용 대상 제품·재료·용기 외의 품목을 다른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한 경우 업체명, 처리 방법(예: 소각, 매립, 재활용), 처리량을 적습니다.
- ④ ①의 회수량에서 ②와 ③의 방법으로 처리한 양을 제외한 수량을 적습니다.

[별지 제4호의3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으로 이동 <2012.11.1>

[ ] 폐기물부담금  
[ ] 재활용부과금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청구인	상호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개인사업자) 생년월일
사유	[ ] 출고 내용 변경	[ ] 수출	[ ] 징수결정의 오류 또는 수납의 착오
품목			
반환청구금액	반환금 지급 은행 및 계좌번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기물부담금[ ] 재활용부과금[ ]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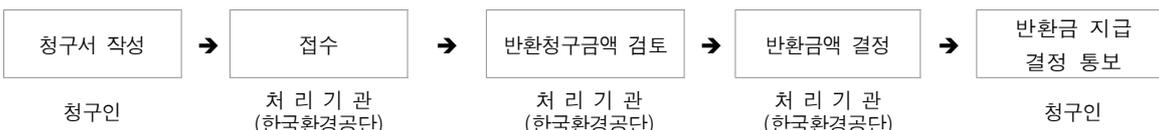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귀하

첨부서류	청구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한국환경공단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7제2항에 따른 자원 절약 및 재활용촉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출고 내용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또는 수출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수결정의 오류 또는 수납의 착오 등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2.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부과금 납부영수증 사본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폐기물부담금  
[ ] 재활용부과금      반환지급 결정서

문서번호:

수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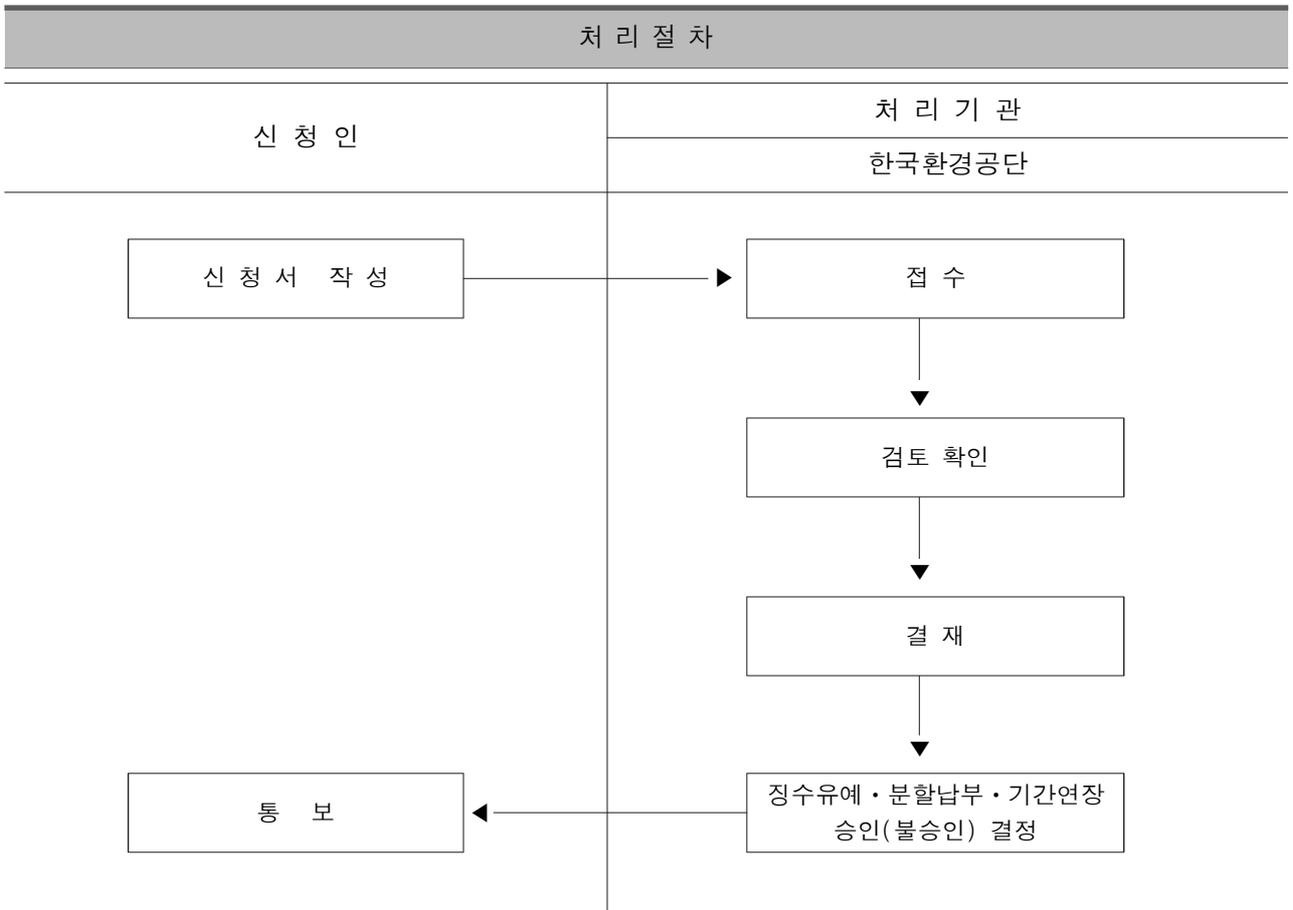
폐기물부담금액[ ] 재활용부과금액[ ]	반환 결정금액	반환 결정일자	반환금지급 은행 및 계좌번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기물부담금[ ] 재활용부과금[ ]을 반환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 인









## 이행기간 연장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기간연장 신청내용	조치명령 및 기간		이행 완료 예정일
	조치명령 내용		
	연장신청 사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3제3항에 따라 이행명령의 이행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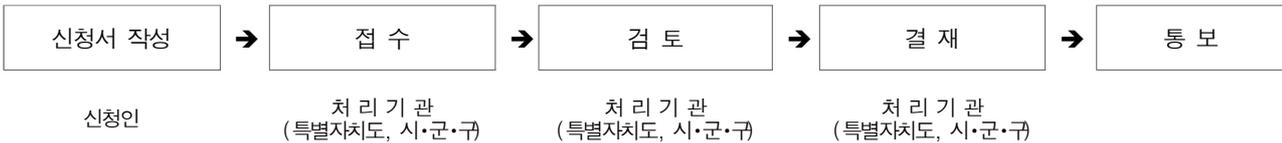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재활용기준 준수계획서	수수료 없음
------	-------------	-----------

### 처리절차



## 분리배출 표시 대상 지정신청서

※ EPR([www.epr.or.kr](http://www.epr.or.kr))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상 호	전화번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지정신청 내 용	대상품목	제품규격		
	제품·포장재 재질(성질·상태)	포장재 무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 대상으로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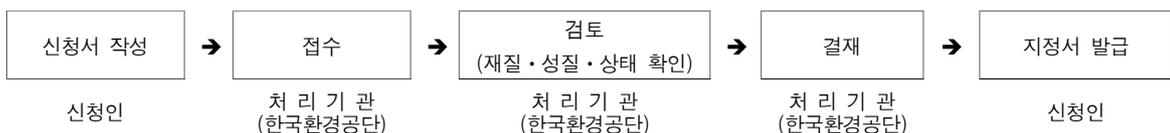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귀하

첨부서류	1.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전문기관의 재질 검사성적(합성수지 재질이나 그 밖의 복합재질로 된 제품·포장재만 해당합니다)에 관한 서류 2. 제품·포장재의 생산·판매량 및 폐기물의 회수체계에 관한 서류 3. 분리배출 표시 도안이 표시된 상표 등에 관한 서류	수수료 없음
------	---	-----------

### 처리절차



## 분리배출 표시 대상 지정서(제 호)

신청인	상 호		전화번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지정신청 내 용	대상품목			
	제품·포장재 재질(성질·상태)			
	제품규격			
	포장재 무게			
지정조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호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직인

## 표준용기 사용등록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상호	전화번호		
	주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등록내용	표준용기 코드	표준용기 사용 제품명		
	표준용기 사용 제품의 종류	연간 예상 용도별 출고량(사용량)		
	연간 예상 회수량	출고 및 회수 지역		
	재사용 설비 보유 현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표준용기의 사용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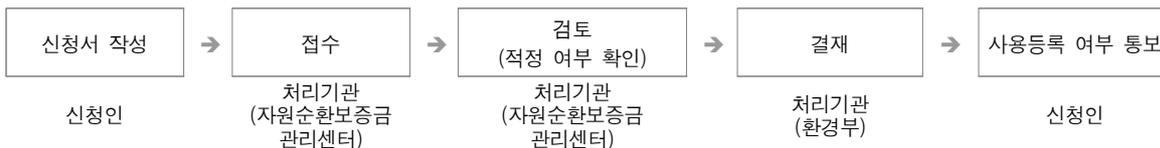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이사장 귀하

### 작성요령

- 표준용기 코드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표준용기 중 사용하려는 표준용기 코드를 적습니다.
- 표준용기 사용 제품의 종류는 수입되거나 판매되는 음료의 종류(예: 소주/맥주/음료 등)를 적습니다.
- 재사용 설비 보유 현황은 세병기, 공병검사기(Empty Bottle Inspection), 제품검사기(Filled Bottle Inspection) 등 재사용에 필요한 설비 보유 현황을 적습니다.

### 처리절차







##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출고·수입 실적서

※ EPR([www.epr.or.kr](http://www.epr.or.kr))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인	상호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개인사업자) 생년월일	

자료제출 내용	①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출고량		수입량		② 연간 총 매출액 (백만원)	③ 연간 총 수입액 (백만원)	④ 페플라스틱 재활용원료 사용량(kg)
		수량	단위 (kg, l, 개)	수량	단위 (kg, l, 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의 출고·수입 실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한국환경공단 귀하

첨부서류	1. 결산보고서 등 제품·포장재의 출고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수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1부 2. 제품·포장재의 중량·용량 산출 기초자료 1부 3. 다음 각 목의 서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페플라스틱재활용원료(이하 “페플라스틱재활용원료”라 합니다)가 제품·포장재에 사용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가. 페플라스틱재활용원료가 제품·포장재에 사용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제품·포장재별 페플라스틱재활용원료 사용량 산출 기초자료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작성방법

- ①란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의 종류 및 재질란의 제품·포장재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예: 종이팩, 타이어)
- ②란은 제조업자의 전년도 연간 총 매출액을 적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해당하는 제품·포장재만 해당합니다).
- ③란은 수입업자의 전년도 연간 총 수입액을 적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해당하는 제품·포장재만 해당합니다).
- ④란은 전년도 페플라스틱재활용원료의 사용량을 적습니다(페플라스틱재활용원료가 제품·포장재에 사용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	-----	-----	----------

제출인	상 호	전화번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 계획	① 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② 재활용 의무율	회수 및 재활용 계획								
			③ 재활용의무 이행방법		회수(인계자)		재활용(인수자)				
			직접	위탁	④ 수탁자 및 소재지	⑤ 방법	⑥ 수탁자 및 소재지	⑦ 방법 및 기준			

⑧ 회수·재활용 실적의 확인 계획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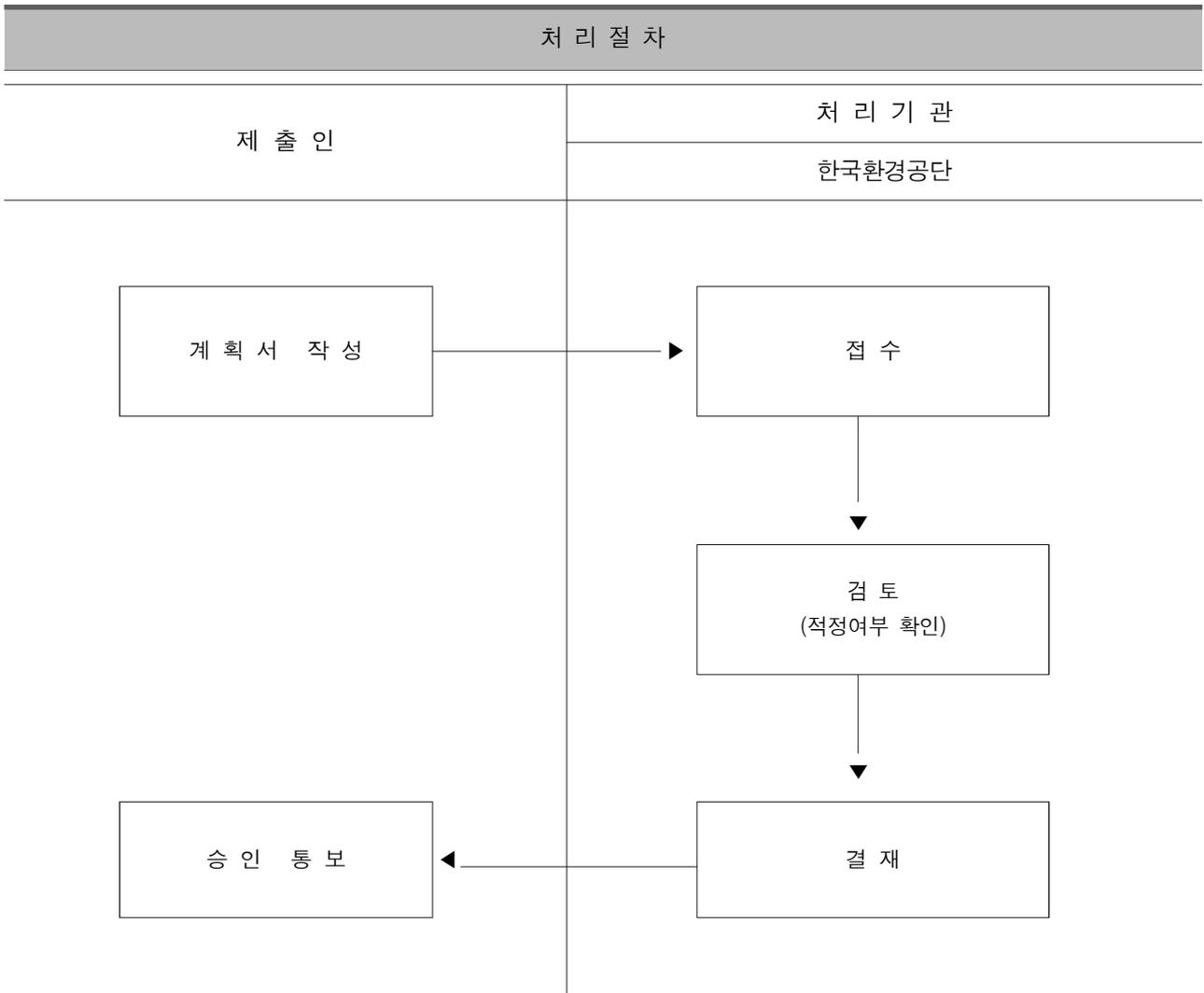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회수·재활용 시설(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회수·재활용 시설을 말합니다)의 종류 및 용량에 관한 서류 1부 2.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의 회수·운반 계획(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회수·운반 계획을 말합니다) 1부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재활용사업자에게 재활용을 위탁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	---	--------

#### 작성요령

- ①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의 품목명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의 종류 및 재질란의 제품·포장재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예: 종이팩, 타이어).
- ②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해당 품목의 재활용의무율을 적습니다.
- ③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재활용의무를 이행할 방법에 O표를 합니다.
- ④ 제품·포장재의 폐기물을 회수하여 인계한 업체의 명칭 및 소재지를 적습니다.
- ⑤ 제품·포장재의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업체에 인계한 상태(선별, 압축 등)를 적습니다.
- ⑥ 회수한 제품·포장재의 폐기물을 인수한 업체의 명칭 및 소재지를 적습니다.
- ⑦ 제품·포장재의 폐기물을 인수한 업체가 재활용한 방법 및 기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을 적습니다.
- ⑧ 회수·재활용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서면 또는 시스템 등)을 적습니다.





##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	-----	-----	------	-----

제출인	상호	전화번호
	주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 계획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				③ 출고 예상량 (개)	④ 재활용 의무량 (③×80%)	⑤ 비고
	① 제품명	규격(ml)	자원순환보증금 (원/개)	② 취급수수료 (원/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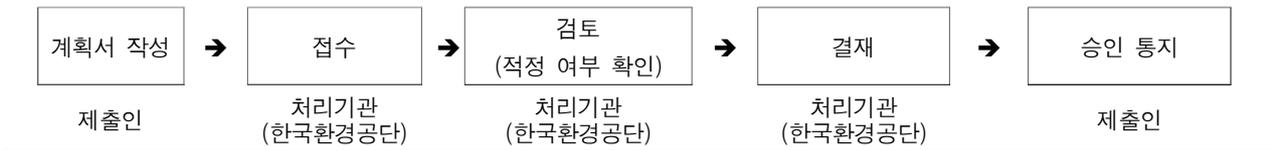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의 회수·재사용 계획 2. 자원순환보증금 반환에 대한 홍보 계획	수수료 없음
------	---	-----------

### 작성요령

- ①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의 구체적인 제품명을 적습니다.
- ②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에게 지급하는 빈용기 취급수수료를 적습니다.
- ③ 재활용의무를 이행할 해당 연도의 출고 예상량을 적습니다.
- ④ 해당 연도 출고 예상량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부과된 재활용의무율을 곱한 수량을 적습니다.
- 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표준용기 해당 여부를 적습니다.

### 처리절차



#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 승인서

제출인	상 호	전화번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 승인내용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 계획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재활용 의무율	재활용의무 이행방법		회수 및 재활용 계획				
			직접	위탁	회수(인계자)		재활용(인수자)		
					수탁자 및 소재지	방법	수탁자 및 소재지	방법 및 기준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 확인 방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 승인서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의 구성원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용)

제출인	상 호	전화번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 승인내용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 계획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재활용의무율	회수 및 재활용 계획		
			회수(인계자)	재활용(인수자)	
			회수의무 대행자	수탁자 및 소재지	방법 및 기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직인

##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제출인	상 호	전화번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회수 및 재 활용 의무이행 결과 (단위:kg,l,개)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 포장재	출고량	재활용 의무율	재활용 의무량	회수			재활용			회수· 재활용 실적
					업체명	회수량 (인계량)	방 법	업체명	회수량 (인수량)	방법 및 기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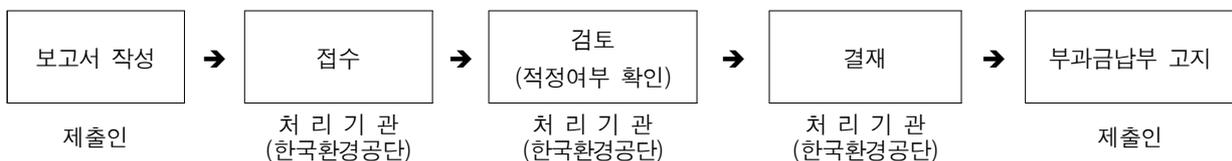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에 따른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준수방법에 관한 증명서류 1부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 관리대장 사본(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받은 자의 관리대장 사본) 1부 3. 회수·재활용 비용 지급명세 등 회수·재활용 실적 증명서류 1부	수 수 료 없 음
------	---	-----------------------

### 처리절차



##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제출인	상호	전화번호
	주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자원순환 보증금 포함제품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 결과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				① 출고 량		재활용 의무량		② 회 수량		③ 재사 용량		④ 재활 용량		⑤ 재 활 용 률 (wt %)	⑥ 비 고
	제품명	규격 (ml)	자원순환 보증금 (원/개)	취급 수수료 (원/개)	중량 (g/개)	(개)	(kg)	(개)	(kg)	(개)	(kg)	(개)	(kg)	(개)	(kg)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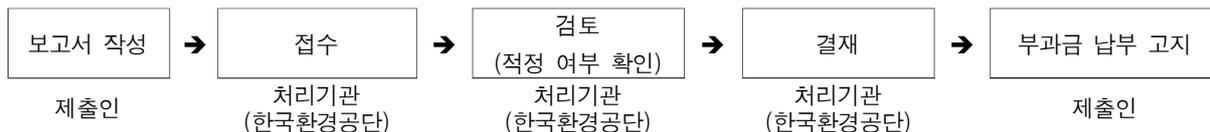
###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전년도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의 출고 실적 증명서류 2. 전년도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의 비용기(다른 비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의 비용기는 제외하되, 표준용기는 포함합니다) 회수 실적 증명서류 3. 회수된 비용기의 재사용 실적 및 제조 공정에서 파손 등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비용기의 재활용 실적 증명서류 4. 자원순환보증금 및 취급수수료(다른 비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의 비용기에 대하여 지급한 것은 제외하되, 표준용기에 대하여 지급한 것은 포함합니다) 지급 명세	수수료 없음
------	---	-----------

#### 작성요령

- 출고량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치와 동일해야 합니다.
- 회수량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치와 동일해야 하며, 회수량을 계산할 때에는 다른 비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의 비용기는 제외하되, 표준용기는 포함합니다.
- 재사용량은 회수된 비용기 중 제품의 제조 공정에서 재사용된 비용기의 양을 말합니다.
- 재활용량은 회수된 비용기 중 제조 공정에서 파손 등으로 재사용되지 못하고 제조 원료 등으로 재활용된 비용기의 양을 말합니다.
- 재활용률은 출고량 중에 재사용되거나 재활용된 양의 비율을 말합니다.
- 비고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표준용기 해당 여부를 적습니다.

#### 처리절차



## 재활용부과금 분할납부신청서

신청인	상 호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개인사업자) 생년월일	

분할납부 신청사항	품목	재활용부과금
--------------	----	--------

분할납부하려는 횟수 및 금액	회 별	납부일자	납부금액	비고
	제1회	8월 31일		
	제2회	11월 30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재활용부과금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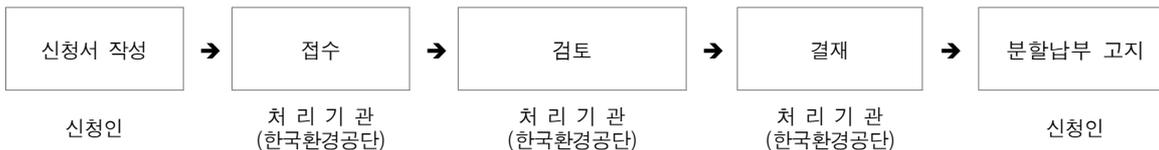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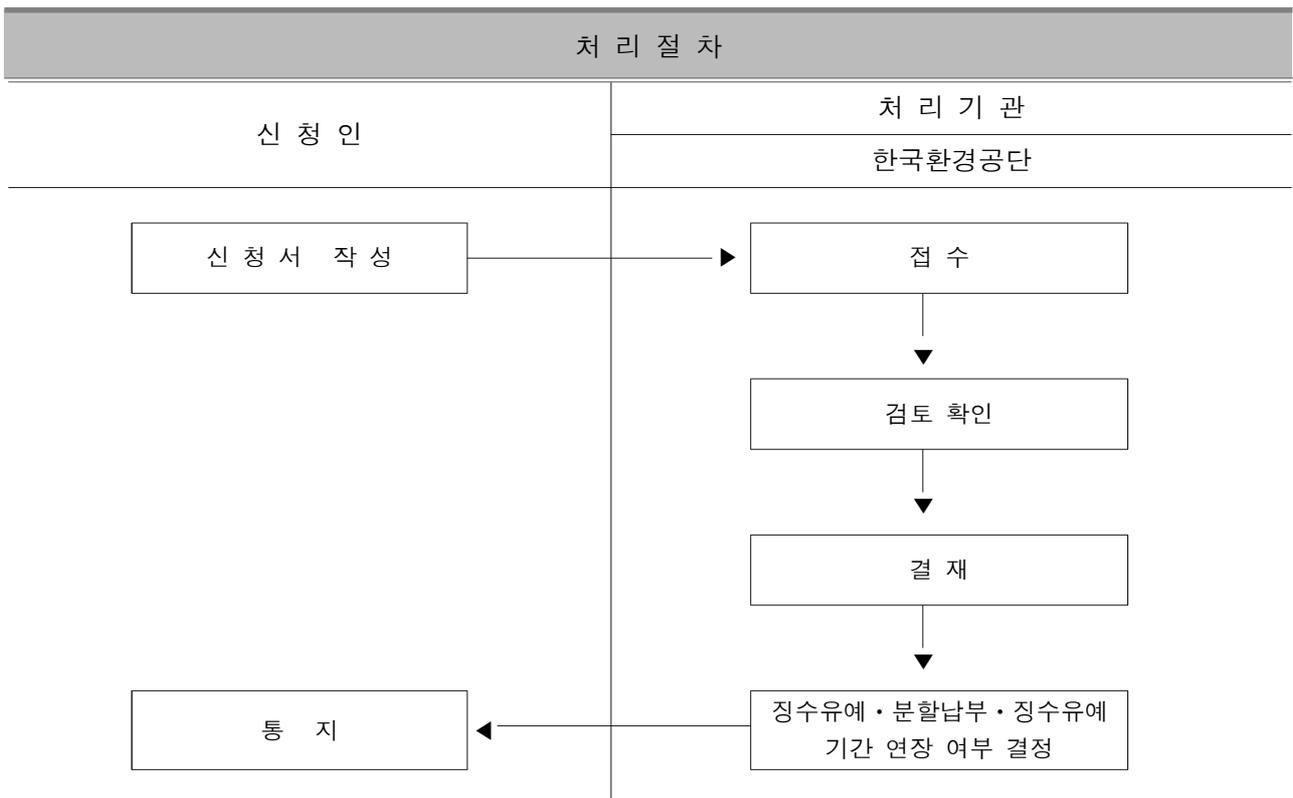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귀하

### 처리절차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신설 2023. 8. 22.>

재활용부과금 [ ] 징수유예 [ ] 결정 통지서  
[ ] 분할납부 [ ] 거부결정  
[ ] 징수유예 기간 연장

관리번호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또는 명칭					
사업장 소재지					
사업의 종류			종목		
재활용부과금의 내용				징수유예(기간 연장) 금액	
연도(분기)	납부번호	납부기한	금액		
징수유예(기간 연장) 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			
분할납부의 기한 및 금액					
횟수	연도(분기)	납부번호	분할납부기한	분할납부금액	
거부결정 사유					
<p>귀하가 20 . . . 신청한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 또는 거부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p> <p>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p>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div style="border: 2px solid orange; display: inline-block; padding: 5px;"> <b>적인</b> </div>	

## 재활용부과금 징수유예 취소통지서

납부자	성명				
	주소				
	사업장 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재활용부과금의 내용					
연도(분기)	납부번호	납부기한	금액	미납 여부	
징수유예(기간 연장) 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			
분할납부의 기한 및 금액					
횟수	연도(분기)	납부번호	분할납부기한	분할납부금액	미납 여부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수유예 기간 연장) 취소 금액 내용					
횟수	연도(분기)	납부번호	납부기한(분할납부기한)	금액(분할납부금액)	
징수유예 취소 사유					
<p>귀하에게 제 호(20 . . .)로 통지한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수유예 기간 연장)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2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취소하였음을 통지합니다.</p> <p>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div style="border: 2px solid orange; display: inline-block; padding: 5px 15px;"> <b>직인</b> </div>		

## 고형연료제품 수입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

신고인	상호	한글		사업자등록번호	
		영문			
	성명 (대표자)	한글	생년월일		
		영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신 고 내 용

수입 고형연료 제품 제조업체	상호(영문)		국제사업자등록번호 (DUNS-No.)	
	사업장 소재지			
	① 제조공정			

수입 예정 연월일	국내 하역항	제조국(수출국) 및 경유국

수입 고형연료제품 종류(품목)	② HSK No. (10자리)	③ 수입량 (톤)	④ 운반계획		공급계획		
			운반자	운반 종류	업체명	사용시설 종류	공급량 (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환경관서의 장 귀하

(뒤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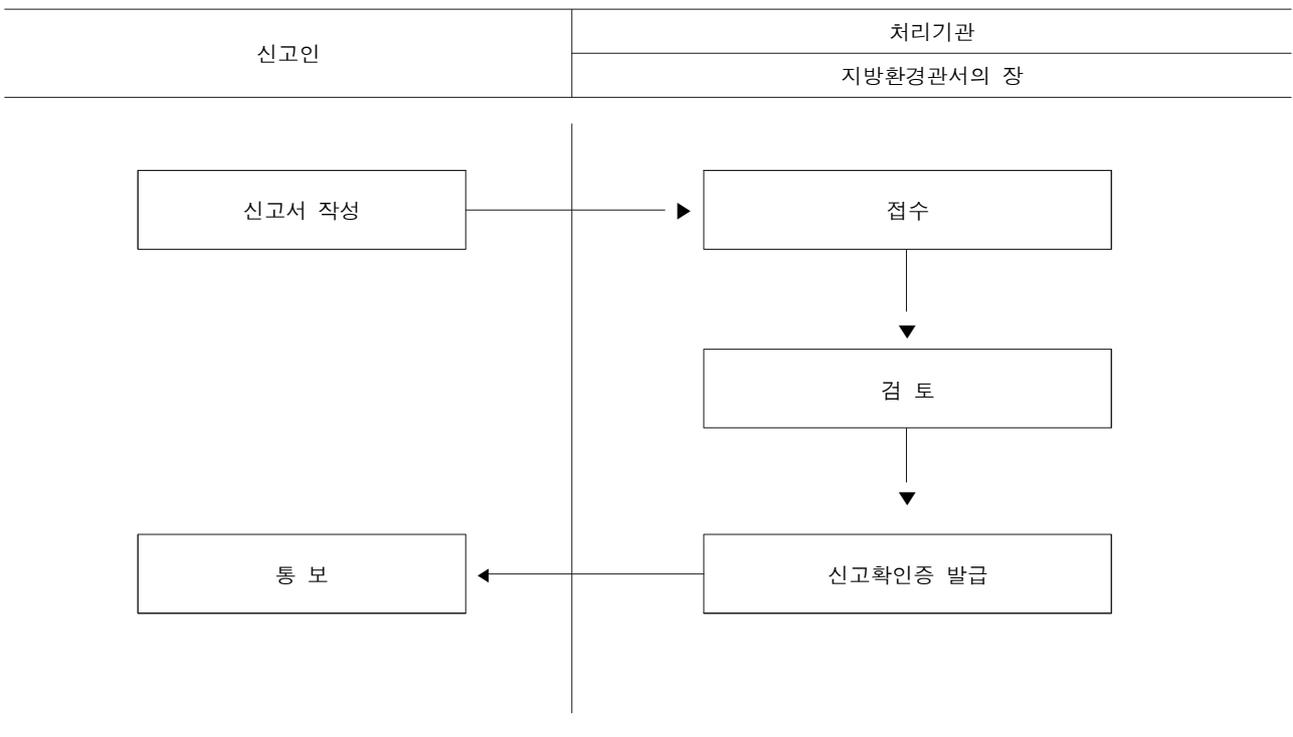
<p>첨부서류</p>	<p>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결과서 사본(수입신고서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합니다)</p> <p>2. 고�형연료제품의 수입가격이 명시된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p> <p>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운반·보관·공급·처리 계획서</p> <p>가. 고�형연료제품의 연간 예상 수입량(제조국·제조업체) 및 공급량(공급업체)</p> <p>나. 고�형연료제품의 국내 반입을 위한 운송수단 및 국내 반입 후 실시할 전수방역 계획(전수방역 계획의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의 바이오 고�형연료제품 중 성형제품은 제외하며, 별표 7 제2호의 바이오 고�형연료제품 중 비성형제품은 제조 과정에서 150℃ 이상으로 10분 이상 열처리한 후 즉시 밀봉 포장했음을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급한 검역증명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제외한다)</p> <p>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고�형연료제품의 처리계획</p> <p>라.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운반·보관·공급·처리 과정에서의 환경오염 방지대책</p>	<p>수수료 없음</p>
-------------	--	-------------------

### 작성 방법

- ① 수입하려는 고�형연료제품이 무엇을 원료로 무슨 시설에서 어떤 방법으로 제조되는지를 간략히 적습니다.
- ②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No.: Harmonized System Korea Number)의 품목번호 10자리를 적습니다.
- ③ 수입계약서 등에 따른 수입량을 적습니다.
- ④ 운반자란에는 자가 운반의 경우에는 "자가"로 적고, 위탁 운반의 경우에는 업소명을 적으며, 운반종류란에는 운송수단의 종류(선박, 항공기, 트럭/컨테이너, 탱크로리, 기타)를 적습니다.

### 처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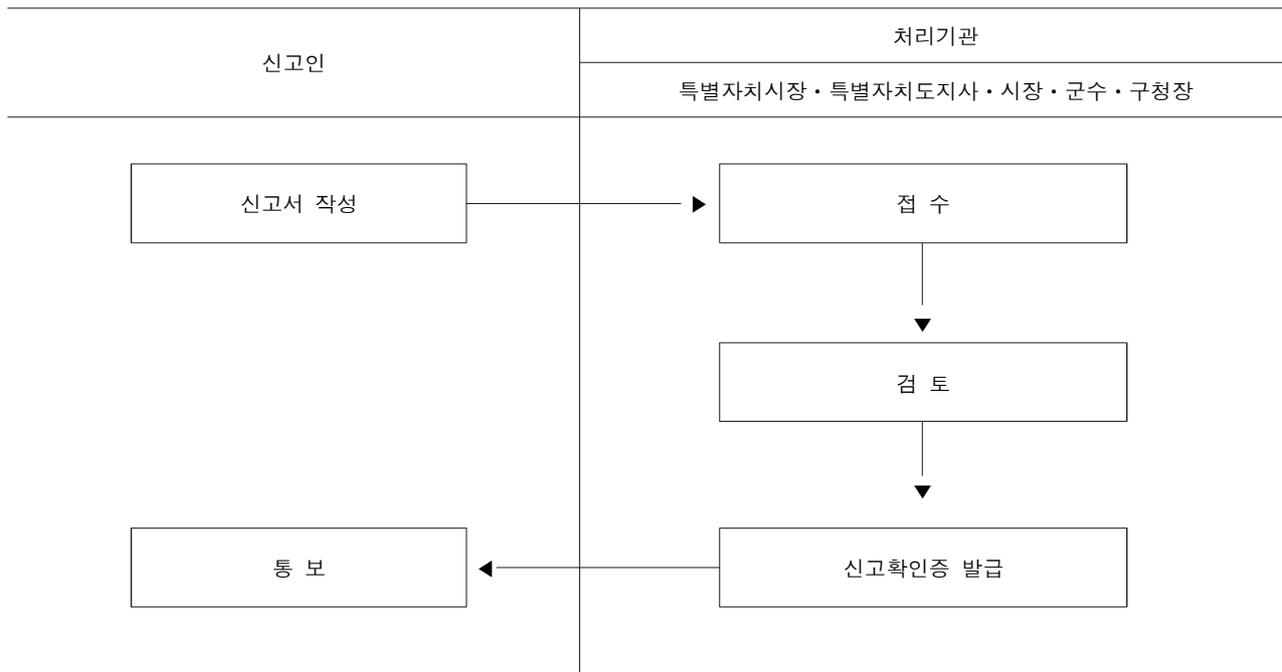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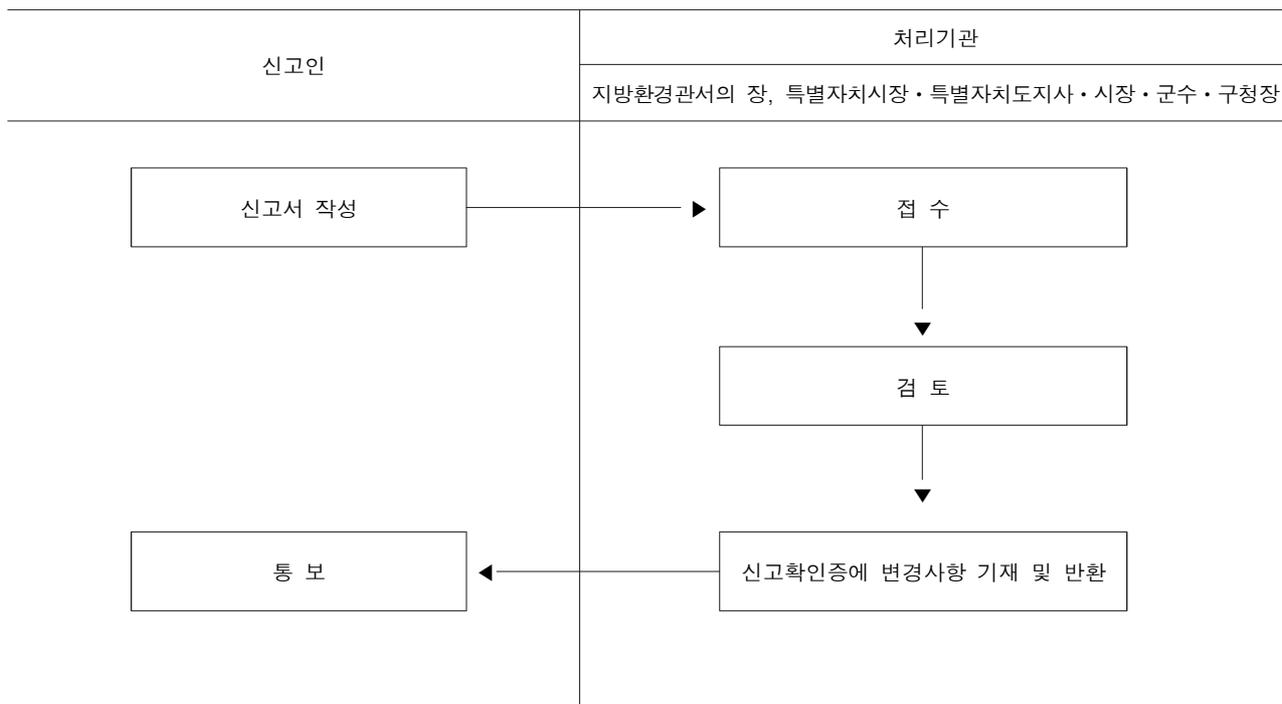






###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7서식] <개정 2020. 5. 27.>

[ ] 수입

##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신청서

[ ] 제조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연장: 20일)
신청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대상	① 종류	일반 고형연료제품 [ ] 성형, [ ] 비성형 제조국(수입품의 경우)	바이오 고형연료제품 [ ] 성형, [ ] 비성형
		제조업체(수입품의 경우)	
		② 원재료의 종류 및 구성비율	
	③ 보관장소 또는 제조시설		
	④ 보관형태 [ ] 창고보관, [ ] 포장, [ ] 기타 ( )		
	⑤ 품질검사신청물량(수입의 경우)		
⑥ 품질검사 신청 항목	[ ] 일반 고형연료제품 전 항목, [ ] 바이오 고형연료제품 전 항목, [ ] 수분 항목		
	기타 항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입 또는 제조하려는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폐자원에너지센터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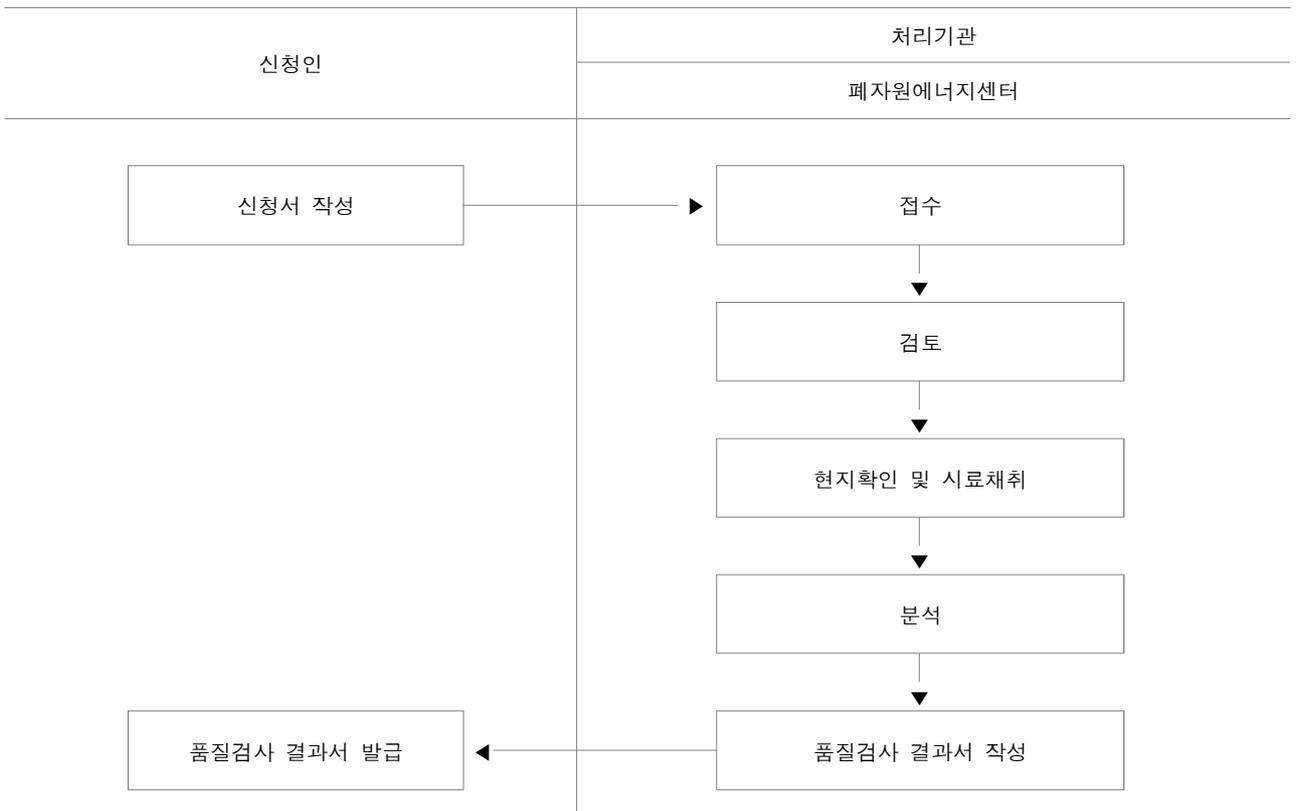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금액
------	----	--

**작성방법**

③란은 고품연료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최종 선적 전 보관장소를 적고, 고품연료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제조시설의 주소를 적되, 제조시설에서 검사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관장소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발급번호 제 호

수입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결과서**

제조

신청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검사대상	종류 및 검사물량	종류	검사물량
	원재료의 종류 및 구성비율		
	제조국·제조업체 (수입의 경우)	제조국	제조업체
	시료채취 장소 및 그 밖의 참고사항		
검사결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검사한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폐자원에너지센터장



발급번호 제 호

수입

**고형연료제품 품질명세서**

제조

고형연료 제품 수입· 제조사	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수입·제조신고번호	
	제조국·제조업체(수입품의 경우)	

고형연료 제품 품질내용	종류	<input type="checkbox"/> 일반 고형연료제품 <input type="checkbox"/> 성형 <input type="checkbox"/> 비성형			<input type="checkbox"/> 바이오 고형연료제품 <input type="checkbox"/> 성형 <input type="checkbox"/> 비성형		
	원재료의 종류 및 구성비율						
	모양 및 크기	직경/가로			길이/세로		
		mm			mm		
	발열량 및 수분 함유량	(저위)발열량			수분 함유량		
		kcal/kg			wt. %		
	금속성분 함유량	수은(Hg)	카드뮴(Cd)	납(Pb)	비소(As)	크로뮴(Cr)	안티몬(Sb)
		mg/kg	mg/kg	mg/kg	mg/kg	mg/kg	mg/kg
코발트(Co)		구리(Cu)	망간(Mn)	니켈(Ni)	탈륨(Tl)	바나듐(V)	
mg/kg		mg/kg	mg/kg	mg/kg	mg/kg	mg/kg	
	기타:						
원소 성분 함유량	회분 함유량	염소(Cl) 함유량	황분(S) 함유량		바이오매스		
	wt. %	wt. %	wt.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6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6제3항에 따라  
 년 월 일 실시한 시험의 고형연료제품 품질명세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시험기관장

직인

##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소재지	(전화번호: )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 ] 신규 설치 시설 [ ] 연료 추가 또는 변경 시설						
	시설의 종류						
	사용하려는 고형연료제품의 종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일반 고형연료제품</td>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바이오 고형연료제품</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 성형, [ ] 비성형</td> <td style="text-align: center;">[ ] 성형, [ ] 비성형</td> </tr> </table>		일반 고형연료제품	바이오 고형연료제품	[ ] 성형, [ ] 비성형	[ ] 성형, [ ] 비성형	
	일반 고형연료제품	바이오 고형연료제품					
	[ ] 성형, [ ] 비성형	[ ] 성형, [ ] 비성형					
	고형연료제품 사용 계획량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고형연료제품 사용 계획량</td>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기타 사용 연료 종류 및 사용량</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톤/년)</td> <td>사용연료 종류 : 사용량 : (톤/년)</td> </tr> </table>		고형연료제품 사용 계획량	기타 사용 연료 종류 및 사용량	(톤/년)	사용연료 종류 : 사용량 : (톤/년)		
고형연료제품 사용 계획량	기타 사용 연료 종류 및 사용량						
(톤/년)	사용연료 종류 : 사용량 : (톤/년)						
일일 가동시간(시간/일)							
연간 가동일수(일/년)							
설치(연료 추가 또는 변경) 예정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7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의2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운영계획서 2. 사용하려는 고�형연료제품에 대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6제1항에 따른 품질명세서 사본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8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결과서 사본(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7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고�형연료제품으로 사용연료를 변경하거나 고�형연료제품을 사용연료로 추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수



검토



통보

신청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허가번호    제            호  <h2 style="margin: 0;">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증</h2>			
상 호 (사업장명칭)		고형연료제품 사용 종류	
성 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용시설 소재지		전화번호	
일일 가동 시간 (시간/일)		연간 가동 일수 (일/년)	
시설용량 (톤/년)		고형연료제품 사용량 (톤/년)	
허가조건			
<p>「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7제2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을 허가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p>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div>			

<변경 사항>

일 자	내 용	확 인 (서명 또는 인)

<처분 사항>

일 자	내 용	확 인 (서명 또는 인)

<참고 사항>

일 자	내 용	확 인 (서명 또는 인)

# 고형연료제품 사용 [ ] 변경허가 신청서 [ ]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	------	------	----

허가 번호 제 호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사용시설 소재지 (전화번호)	

변경사유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7제2항 및 시행규칙 제20조의7제5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사용 [ ] 변경허가 [ ] 변경신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귀하

시장 · 군수 · 구청장

붙임서류	1.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증 원본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8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정기검사 결과서(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서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에 검사한 것으로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 처리절차





제 호			
<input type="checkbox"/>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input type="checkbox"/>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b>정기검사 결과서</b>	
신청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시설 소재지	(전화번호: )	
검사 연월일			
다음 정기검사 기간			
검사 장소			
검사대상 시설 제원(諸元)			
제조·사용 용량	톤/년	가동시간	(시간/일)
		연간가동일수	(일)
제조·사용 연료	(일반 고형연료제품 / 바이오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 공정			
검사결과	(항목별 검사결과 붙임)		
특기사항			
<p>「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8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사용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 최초검사, [ ] 계속검사, [ ] 변경검사) 결과서를 발급합니다.</p>			
년      월      일			
폐자원에너지센터장		인	



##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신청서

※ EPR([www.epr.or.kr](http://www.epr.or.kr))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	-----	-----	----------

신청인	조합명	전화번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재활용사업 공제조합 일반 현황	대상품목	조합원 수	분담금(원/kg)
	재활용의무총량	조합의 재활용의무량	재활용의무량 점유율(%)
	자산(백만원)	부채(백만원)	자본(백만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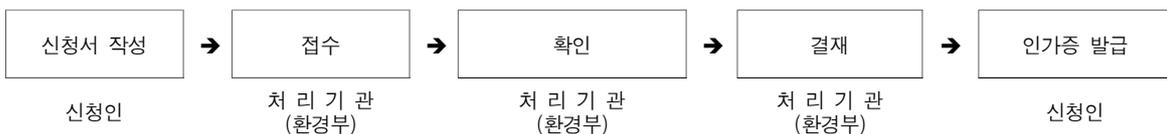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목적·사업범위·조합원 및 분담금과 그 밖에 조합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법인의 정관 2. 조합에 가입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참여약정서 사본 3. 조합원별 재활용의무량 4. 자체 재활용시설의 명세(자체 재활용시설을 가지고 있는 조합만 해당합니다) 5. 재활용의무의 대행을 위한 사업계획서(위탁하는 경우 위탁계획을 포함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 처리절차



제 호

###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증

1. 조합 명칭:

2. 소재지:

3. 대표자: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4. 사업 내용

5. 인가조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가합니다.

년 월 일

환경부장관 [인]



##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 설립인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유통지원센터 명칭	전화번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재활용 가능자원 유통지원 센터 일반 현황	대상품목	설립 조합명	지원금(원/kg)
	품목별 회수·재활용 의무 총량	유통지원센터의 회수·재활용 의무량	회수·재활용 의무량 점유율(%)
	자산(백만원)	부채(백만원)	자본(백만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 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의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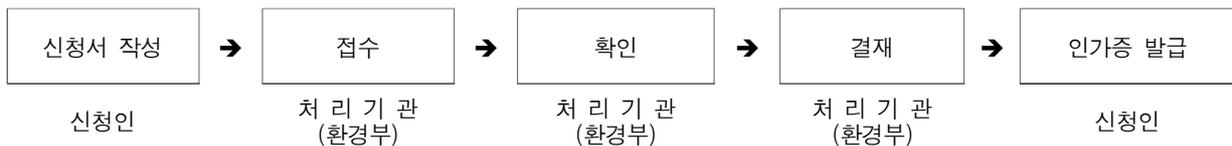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목적·사업범위·구성원 및 운영비와 그 밖에 유통지원센터의 운영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법인의 정관 2.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시스템 구축계획서 3. 조합별 회수의무의 대행을 위한 약정서 및 사업계획서 4. 자체 재활용가능자원 하역 및 선별 시설의 명세(자체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 처리절차



제 호

##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 설립인가증

1. 유통지원센터 명칭:
2. 소재지:
3. 대표자: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4. 사업내용
5. 인가조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가합니다.

년 월 일

환경부장관

작인



[ ]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사업결산보고서  
[ ] 유통지원센터

(앞쪽)

사업연도 :            년도

조직 개요	조합(센터)명	전화번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① 재무상태표

자 산		부 채	
구 분	금 액(원)	구 분	금 액(원)
<b>자산</b>		<b>부채</b>	
<b>I. 유동자산</b>		<b>I. 유동부채</b>	
(1) 당좌자산		- 미지급금	
- 현금		- 예수금	
- 보통예금		- 단기차입금	
- 미수금		- 선수금	
- 선급금		- .....	
- .....		<b>II. 비유동부채</b>	
(2) 재고자산		- 장기차입금	
- 제품		- 퇴직급여충당부채	
- 원재료		- .....	
- .....		<b>부 채 총 계</b>	
<b>II. 비유동자산</b>		<b>자본</b>	
(1) 투자자산		<b>I. 자본금</b>	
- 장기성예적금		- 조합원출자금	
- .....		<b>II. 자본잉여금</b>	
(2) 유형자산		<b>III. 자본조정</b>	
- 비품		<b>IV. 기타포괄손익누계액</b>	
- 시설장치		<b>V.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b>	
- 차량운반기구		- 법정적립금	
- .....		- 임의적립금	
(3) 무형자산		- 미처분이익잉여금 (미처리결손금)	
- 특허권		- .....	
- .....			
(4) 기타비유동자산		(당기순손익)	
- 임차보증금		당기 :            원	
- .....		전기 :            원	
		<b>자 본 총 계</b>	
<b>자 산 총 계</b>		<b>부 채 및 자 본 총 계</b>	

작성방법

1. 출자금: 조합원(회원)이 납입한 출자금 총액[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회원)에 환급한 출자금은 제외합니다.]
2. 자산 = 부채 + 자본
3. 예시된 세부항목("-")은 조합(센터) 상황에 맞게 수정 가능합니다.

## ② 손익계산서

구 분	금 액(원)	구 분	금 액(원)
<b>I. 매출액</b>		<b>VI. 영업외수익</b>	
- 000사업 수입		- 이자수익	
- 000 수입		- 지원금	
- .....		- 후원금	
<b>II. 매출원가</b>		- 회비	
- 판매원가		- 잡이익	
- 서비스원가		- 보조금	
- .....		- .....	
<b>III. 매출총손익</b>		<b>VII. 영업외비용</b>	
<b>IV. 판매비와 관리비</b>		- 이자비용	
- 임직원급여		- 기부금	
- 퇴직급여		- 잡손실	
- 상여금		- .....	
- 복리후생비		<b>VIII. 법인세차감전손익</b>	
- 여비교통비		<b>IX. 법인세등</b>	
- 통신비		<b>X. 당기순손익</b>	
- 보험료			
- 감가상각비			
- 차량유지비			
- 회의비			
- 사무용품비			
- 소모품비			
- 업무추진비			
- 교육훈련비			
- .....			
<b>V. 영업손익</b>			

## 작성방법

1. 매출총손익 = 매출액 - 매출원가
2. 영업손익 = 매출총손익 - 판매비와 관리비
3. 법인세차감전손익 = 영업손익 + 영업외수익 - 영업외비용
4. 당기순손익 = 법인세차감전손익 - 법인세등
5. 예시된 세부항목("-")은 조합(센터) 상황에 맞게 수정 가능합니다.



[ ] 재활용사업공제조합  
[ ] 유통지원센터

사업결과 보고서

( 쪽 중 1쪽 )

조직 개요	조합(센터)명	전화번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조직 연혁	연월일	주요내용

설립 목적	
----------	--

조직도	
-----	--

임원 현황	직위	성명	경력	겸직 여부

조합원 (회원) 현황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유통지원센터		
	재활용의무생산자 개사	회수·선별 개사	재활용 개사	계 개사

직원 현황		명
----------	--	---

해당 연도  
사업계획

해당 연도  
사업결과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09.4.7>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 관리대장								
제품·포장재명:						(단위: kg, ℓ, 개)		
연월일	① 회수 내용		처리 내용					④ 보관량
	업체명	회수량	② 재활용		③ 그 밖의 사항			
			방법 및 기준	재활용량	업체명	처리방법	처리량	

<작성요령>

관리대장은 재활용업자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의 종류 및 재질란의 제품·포장재별로 분리하여 작성합니다.

- ①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를 수거한 업체명, 회수량을 적습니다.
- 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의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재활용량을 적습니다. 다만, 재활용량은 재활용제품의 출고일을 기준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③ 선별 시 발생한 쓰레기 또는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외의 품목을 다른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한 경우 업체명, 처리방법(예: 소각, 매립, 재활용), 처리량을 적습니다.
- ④ ①의 회수량에서 ②와 ③의 방법으로 처리한 양을 제외한 수량을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2. 7. 1.>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의 출고·반환 관리대장		
(제품명:                      용량:                      )		
연 월 일	출 고 량(개)	반 환 량(개)(회수량)

<작성요령>

1. 출고대장은 제품 및 용량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이 출고되고 반환될 때마다 날짜별로 적어야 하며, 월말에 합계를 적어야 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09.4.7>

재활용지정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실적대장							
연월일	이용계획	구 입 량			이용량	보관량	비 고
		국 내	수 입	계			

<작성요령>

1. 재활용가능자원의 구입량, 이용량 또는 보관량이 변경될 때마다 날짜별로 적어야 합니다.
2. 양은 중량단위인 “톤” 또는 “kg”으로 적어야 합니다.
3. 구입량은 재활용가능자원의 사용시설이 있는 사업장예의 반입일을 기준으로 하며, 국내 발생자원과 수입되는 자원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이용량은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최초 투입(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22호서식] 삭제 <2007.12.31>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09.4.7>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실적대장									
연월일	지정 부산물 종류	발생량	재활용 내용			수요 내용			처리 내용
			재활용 용량	방법	보관량	용도	제품명	인계 업소	

<작성요령>

1. 지정부산물의 발생·재활용 또는 처리 날짜별로 적어야 합니다.
2. 양은 중량단위인 "톤" 또는 "kg"으로 적어야 합니다.
3. 재활용방법은 재생제품으로 만드는 과정을 첨가되는 재료 등과 함께 적어야 합니다.
4. 보관량은 재활용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양을 적어야 합니다.
5. 처리 내용에는 재활용하지 않는 지정부산물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처리방법 등을 적어야 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